

第254回國會
(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6月14日(火)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國慶日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2. 國慶日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3.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
4.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
5. 地方自治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6.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안
7.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8. 地方財政法改正法律案
9.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10. 請願法改正法律案
11. 새마을금고法中改正法律案(채수찬 의원 대표발의)
12. 새마을금고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賞勳法中改正法律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14.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15.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
16.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17.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18.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19.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20.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1.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22.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주요 현안보고
가. 행정자치부 소관

審査된案件

1. 國慶日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구노희·권철현·김낙순·김덕규·김맹곤·김영주·김우남·김원웅·김재홍·김충환·김태홍·김한길·김현미·김형주·노웅래·노현송·노회찬·단병호·류근찬·문학진·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진·박찬석·박찬숙·복기왕·손봉숙·송영길·신국환·심재철·안명욱·엄호성·오영식·우상호·우윤근·우제항·유기준·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재건·이미경·이상경·이상민·이영순·이종걸·임종석·임종인·임채정·장복심·장향숙·전병헌·정덕구·정병국·정성호·정청래·조배숙·천영세·천정배·최용규·최재천·최인기·홍미영 의원 발의) 3

2.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이규택 · 이재오 · 엄호성 · 이경제 · 이인기 · 정병국 · 박찬숙 · 류근찬 · 박순자 · 고진화 · 이군현 · 허천 · 정화원 · 진수희 의원 발의)	3
3.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지병문 · 원혜영 · 김태홍 · 김태년 · 노웅래 · 구논회 · 최철국 · 이인영 · 이호웅 · 장복심 · 정봉주 · 윤호중 · 유시민 · 홍미영 · 최순영 · 권선택 · 주승용 · 배기선 · 강기정 · 임종석 의원 발의)	3
4.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심재덕 · 강성중 · 강창일 · 김기석 · 김낙성 · 김선미 · 김성곤 · 김영춘 · 김재홍 · 김종률 · 김종인 · 김진표 · 김충환 · 김태년 · 김태홍 · 김한길 · 김혁규 · 김현미 · 김희선 · 노웅래 · 노현송 · 문학진 · 박기춘 · 박명광 · 박병석 · 박상돈 · 박영선 · 박찬숙 · 변재일 · 서재관 · 신기남 · 신중식 · 신학용 · 안명옥 · 안민석 · 안병엽 · 양승조 · 염동연 · 우상호 · 우제창 · 우제항 · 원혜영 · 유승희 · 유인태 · 유정복 · 유필우 · 윤원호 · 윤호중 · 이계안 · 이계진 · 이광철 · 이기우 · 이명규 · 이목희 · 이미경 · 이상경 · 이상락 · 이시종 · 이용희 · 이원영 · 이재창 · 이호웅 · 임종석 · 장복심 · 정덕구 · 조정태 · 조배숙 · 조성래 · 조성태 · 주승용 · 최규식 · 최용규 · 최재성 · 한선교 · 홍문표 · 홍미영 · 홍창선 · 황진하 의원 발의)	3
5. 地方自治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 · 서혜석 · 오영식 · 정성호 · 양승조 · 유승희 · 선병렬 · 강기정 · 이기우 · 문학진 · 임종인 · 노영민 · 이상민 · 김종률 · 김형주 · 정청래 · 박명광 · 우원식 · 김낙순 · 서갑원 · 조정식 · 정덕구 · 박찬석 · 홍창선 · 안민석 · 유시민 · 장향숙 · 최철국 의원 발의)	4
6.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21
7.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정부 제출)	21
8. 地方財政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1
9.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정부 제출)	21
10. 請願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7
11. 새마을금고法中改正法律案(채수찬 의원 대표발의)(채수찬 · 김성곤 · 김영춘 · 김종률 · 김희선 · 문학진 · 박명광 · 박병석 · 박재완 · 안상수 · 엄호성 · 오제세 · 우제창 · 유승민 · 윤건영 · 윤호중 · 이계경 · 이근식 · 이상경 · 이상락 · 이승희 · 이원영 · 이종구 · 정덕구 · 정성호 · 지병문 · 신학용 의원 발의)	47
12. 새마을금고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7
13. 賞勳法中改正法律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 · 안택수 · 심재철 · 윤건영 · 이군현 · 정종복 · 유승민 · 이인기 · 김영숙 · 노웅래 · 노현송 · 이상득 · 심재덕 · 박세환 · 김영선 · 김재원 · 엄호성 · 김기현 · 정병국 · 황우여 · 서재관 · 이경제 의원 발의)	56
14.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 · 강창일 · 장복심 · 서재관 · 양형일 · 민병두 · 김태홍 · 김희선 · 박기춘 · 홍미영 · 지병문 · 조성래 · 노현송 · 윤원호 · 권선택 의원 발의)	56
15.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 · 배일도 · 이상경 · 박기춘 · 정성호 · 우제항 · 김태년 · 신기남 · 양형일 · 유인태 · 최재천 · 김태홍 · 안상수 · 조정태 · 고진화 · 서재관 · 최성 · 엄호성 · 노웅래 · 고조홍 · 황우여 · 홍미영 · 강기정 의원 발의)	56
16.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 염동연 · 김재홍 · 이덕모 · 유승희 · 이해봉 · 류근찬 · 이종걸 · 김종률 · 권선택 · 김낙순 · 홍창선 · 한화갑 · 김효석 · 노영민 · 오제세 · 이시종 · 우제항 의원 발의)	67
17.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 · 송영길 · 김병호 · 이해훈 · 김용갑 · 김희정 · 안홍준 · 박형준 · 이상배 · 엄호성 · 최경환 · 신국환 · 이성권 · 김애실 · 권경석 · 박계동 의원 발의)	67
18.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유정복 · 박세환 · 박재완 · 김재원 · 정문헌 · 서병수 · 허천 · 박계동 · 권경석 · 박찬숙 · 엄호성 · 이주호 · 이해훈 · 이경제 · 김명주 · 최경환 · 남경필 · 권영세 · 김양수 · 최구식 · 원희룡 · 윤건영 · 박형준 · 김석준 · 임인배 · 김충환 · 이재웅 · 심	

재철 · 김희정 · 서상기 · 박진 · 정병국 · 나경원 · 황우여 의원 발의) 67

19.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 · 김재경 · 김재원 · 유정복 · 안상수 · 엄호성 · 이혜훈 · 김문수 · 이군현 · 박계동 의원 발의) 67

20.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염동연 · 이상민 · 김영주 · 김태홍 · 김재경 · 이광철 · 이해봉 · 고흥길 · 오제세 · 김희선 · 신중식 · 김종률 · 강길부 · 우제창 · 이원영 의원 발의) 67

21.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문학진 · 강혜숙 · 김태년 · 김태홍 · 김현미 · 김형주 · 김희선 · 노웅래 · 박명광 · 변재일 · 서갑원 · 서혜석 · 안민석 · 오영식 · 우원식 · 우제창 · 유기홍 · 유승희 · 이근식 · 이기우 · 이상경 · 장영달 · 조경태 · 조정식 · 최규성 · 최성 · 최재천 · 최철국 · 홍미영 의원 발의) 67

22.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7

23. 주요 현안보고 77

가. 행정자치부 소관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용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셔야 될 안건이 23건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에는 열띤 논쟁이 예상되는 안건도 여러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논쟁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을 가능하다면 짧게 해 주시고 쟁점이 되는 법안을 심사할 때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협조하셔서 가능한 오후 6시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게끔 현명하신 여러 여야 위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國慶日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 · 구논회 · 권철현 · 김낙순 · 김덕규 · 김맹곤 · 김영주 · 김우남 · 김원웅 · 김재홍 · 김충환 · 김태홍 · 김한길 · 김현미 · 김형주 · 노웅래 · 노현송 · 노희찬 · 단병호 · 류근찬 · 문학진 · 민병두 · 박기춘 · 박명광 · 박병석 · 박상돈 · 박진 · 박찬석 · 박찬숙 · 복기왕 · 손봉숙 · 송영길 · 신국환 · 심재철 · 안명옥 · 엄호성 · 오영식 · 이상호 · 우윤근 · 우제항 · 유기준 · 유기홍 · 유선호 · 유승희 · 유재건 · 이미경 · 이상경 · 이상민 · 이영순 · 이종걸 · 임종

석 · 임종인 · 임채정 · 장복심 · 장향숙 · 전병현 · 정덕구 · 정병국 · 정성호 · 정청래 · 조배숙 · 천영세 · 천정배 · 최용규 · 최재천 · 최인기 · 홍미영 의원 발의)

2.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이규택 · 이재오 · 엄호성 · 이경재 · 이인기 · 정병국 · 박찬숙 · 류근찬 · 박순자 · 고진화 · 이군현 · 허천 · 정화원 · 진수희 의원 발의)

3.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지병문 · 원혜영 · 김태홍 · 김태년 · 노웅래 · 구논회 · 최철국 · 이인영 · 이호웅 · 장복심 · 정봉주 · 윤호중 · 유시민 · 홍미영 · 최순영 · 권선택 · 주승용 · 배기선 · 강기정 · 임종석 의원 발의)

4.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심재덕 · 강성종 · 강창일 · 김기석 · 김낙성 · 김선미 · 김성곤 · 김영춘 · 김재홍 · 김종률 · 김종인 · 김진표 · 김충환 · 김태년 · 김태홍 · 김한길 · 김혁규 · 김현미 · 김희선 · 노웅래 · 노현송 · 문학진 · 박기춘 · 박명광 · 박병석 · 박상돈 · 박영선 · 박찬숙 · 변재일 · 서재관 · 신기남 · 신중식 · 신학용 · 안명옥 · 안민석 · 안병엽 · 양승조 · 염동연 · 이상호 · 우제창 · 우제항 · 원혜영 · 유승희 · 유인태 · 유정복 · 유필우 · 윤원호 · 윤호중 · 이계안 · 이계진 · 이광철 · 이기우 · 이명규 · 이목희 · 이미경 · 이상경 · 이상락 · 이시종 · 이용희 · 이원영 · 이재창 · 이호웅 · 임종석 · 장복심 · 정덕구 · 조경태 · 조배숙 · 조성래 · 조성태 · 주승용 · 최규식

· 최용규 · 최재성 · 한선교 · 홍문표 · 홍미영 · 홍창선 · 황진하 의원 발의)

5. 地方自治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 · 서혜석 · 오영식 · 정성호 · 양승조 · 유승희 · 선병렬 · 강기정 · 이기우 · 문학진 · 임종인 · 노영민 · 이상민 · 김종률 · 김형주 · 정청래 · 박명광 · 우원식 · 김낙순 · 서갑원 · 조정식 · 정덕구 · 박찬석 · 홍창선 · 안민석 · 유시민 · 장향숙 · 최철국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이용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국정일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5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덕 의원** 심재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동료 의원 78인과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만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무한정 재임을 허용하면서 단체장만 연임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한 헌법 제11조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원수로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독재를 한 아픈 경험 때문에 5년 단임이라는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권력이라고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 연임 제한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으로 주민에 의해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주민의 자치역량과 정치적 역량을 신뢰하고 주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며 민주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계속 재임 여부는 주민이 판단하도록 선택권을 주민에게 되돌려 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임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직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역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임 제한 기간 때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사업이 새로이 선출된 단체장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현행처럼 연임 제한이 있으면 더 이상 단체장을 할 수 없기에 단체장들은 중간에 사퇴하고 국회를 비롯한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지방행정의 안정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선거비용이 증대되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개정될 당시의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단체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엽관제 인사 운영, 지역 내 특정 집단과의 결탁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 유능한 인사의 진출 봉쇄 우려 등을 법 개정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민선지방자치 10년을 맞는 오늘날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교통과 통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식견도 대단합니다. 만일 어느 시장, 어느 군수가 조금만 잘못했다고 한다면 단기간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고 다음 선거에서 여지없이 낙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엽관제 인사와 특정 세력과의 결탁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연임으로 유능한 인사의 진출이 저해된다고 했는데 우리처럼 지역주의가 강한 나라, 특히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지역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없는 인사라도 공천을 하면 바로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인사의 진출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정당공천제이지 연임 제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연임 제한을 둘 어떠한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말로만 외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인지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

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심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신기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지난 16대 국회에 이어서 17대에서 다시금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감회가 무척 깊습니다.

한글날은 1949년 4대 국경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에는 법정 기념일이 되었으나 1990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석연휴를 하루 늘리면서 10월에 편중된 공휴일을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문화계를 비롯한 전 국민적 반발이 잇따랐고, 그 후 10년이 넘도록 한글날 지위 격상을 위한 국경일 지정운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정부도 1999년 3월 한글 발전 종합 추진계획과 2002년 10월 국어 발전 종합계획 시안을 통해 한글날의 국경일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글날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뜻은 명확합니다. 지난 1999년 한글학회에서 실시한 ‘한글날의 국경일 제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0.6%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브랜드 가치 평가기관인 브랜드스톡에서 13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시 제정해야 할 것 같은 공휴일로 전체 응답자의 66.9%가 한글날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한글날 하루뿐만 아니라 해당 주를 국가 및 문화행사주간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86.4%가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들은 현재 한글날의 의미가 저평가되고 있어서 승격이 필요한 기념일 중 첫째로 꼽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글은 인류의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인 샘슨은 인류가 쌓은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의 하나로 꼽았고, 미국 시카고대학의 맥콜리 교수와 하버드대학의 라이샤워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한글날은 세계인 모두가 축하해야 하는 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도 지난 1997년 훈민정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세계의 문맹 퇴치에 애쓴 공로자들에게 주는 상의 이름을 바로 ‘세종대왕상’이라고 명명하는 등 한글과 한글날에 대해 세계인은 찬사와 갈채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글은 쉽고 편리하며 과학적이어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체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식정보화가 진척될수록 더욱 한글의 우수성은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터넷강국의 저류에는 세계인이 흠모하는 한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어로 사용되는 문자가 창제(발명)된 것은 세계 역사상 한글이 유일합니다. 국어가 만들어진 날과 그 주체·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나라 또한 우리 민족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문자 창제를 경축하는 국경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야말로, 이것은 1990년도에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면서 그 근거 중의 하나로 제시됐는데 그런 말 자체야말로 오히려 한글날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강조하는 데 인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상 유일한 문자 창제일인 것입니다.

즉 세계 어느 나라도 문자를 언제, 누가 창제한 일이 없었기에 한글날과 같은 경축일을 가질 수 없는 것이며, 그만큼 한글 창제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리 민족만의 업적인 것입니다. 한글 창제를 두고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는 세종대왕을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했으며, 유네스코에서도 한글날을 기념하는 우리를 본받아 2000년부터 매년 2월 21일을 ‘모국어의 날’로 정하여 민족어와 민족문화 보존활동을 하도록 각국 정부에 권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글날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이견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동안 한글날 국경일 지정이 미뤄진 것은 공휴일 확대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영계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과 공휴일을 늘리는 것은, 공휴일 수를 말하는 것은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공휴일 수 때문에 한글날의 위상이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공휴일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안설명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보충해서 잠깐 부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국경일 중에서 제한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국경일만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지금 성안되어서 곧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도 이미 실현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처럼 공휴일 수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하는 것은 한글과 한글날에 대한 올바른 자리 매김이며, 이로써 한글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사랑을 높이고 한글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국가정책적 측면에서도 한글날의 위상 재정립은 한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 연구를 활성화시켜서 정보화에 적합한 한글의 특성이 더욱 발전되고 21세기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어 고집하고 보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지키기 위해 프랑스어사용국기구를 창설하고 전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를 그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 운영 중이며, 중국도 외무성 정례브리핑에 중국말로 쓰고, 홍콩에서도 학교교육을 중국말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보급하고 있는 등 자국어의 국제화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비교해 볼 때 정작 우리는 세계인이 칭송하는 한글이라는 문화유산을 너무도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류 열풍을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발전은 커녕 외래어 남용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선조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한글날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상징인 한글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개국기념일인 개천절과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에 견줄 만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리는 국경일로 한글날이 지정되는 것은 마땅하며, 1949년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입법 정신을 살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 더 첨부드리면, 국경일을 지정하고 기리

는 데 있어서 불과 근세 몇십 년에 국한되는 이런 근시안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더듬어 가는 큰 안목에서 국경일관을 가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한글날이야말로 가장 국경일다운 국경일일 수 있다는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켜서 찬란한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신기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1항에서부터 5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안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현재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 한글날을 동법에 의한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한글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드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병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경일 지정 필요성에서 한글의 우수성 경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으로서 우리 문화의 자주성과 독자성 확립에 있어서 그 근간이 되므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한글을 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시켜 세계 속에 부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정치·사회·문화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현행 국경일에 대한 조정은 정부수립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온 근간을 바꾸게 된다는 점에서 국경일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별성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경일과 기념일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국경일은 전 국민이 국기를 게양하여

경축하는 날로서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은 모두 공휴일로 지정하여 거국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일은 국군의 날, 한글날, 현충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며, 기념일 중에서는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등 일부만 공휴일로 지정하고 각 기념행사의 주관을 소관 부처의 주제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규정상 모든 국경일은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글날을 추가하여 국경일로 지정할 경우 공휴일이 증가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주5일 근무제 및 공휴일 축소 논의 등의 사항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한글날 기념행사 장소 지정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안은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 지정함에 있어 그 기념행사를 경기도 여주군에 소재하는 영릉(세종대왕릉)에서 거행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법 제3조에서 이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만큼 기념행사 장소는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다른 국경일과 달리 기념행사 장소를 법률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안, 심재덕 의원 대표발의안,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안의 3건이 되겠는데 3건을 병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통제장치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1949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1961년에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다시 부활되었으며 1995년부터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직접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민선자치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행정이 책임성과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주민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었고, 2006년부터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됨으로써 주민 참여의 폭이 더욱 확대되고 책임행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지병문 의원 안에서 도입하려는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선거에서 부적합하게 선출된 공직자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선출직 공직자를 주민소환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는 제도로 인식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선자치가 출범한 지 10년 남짓하며, 그동안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의 지역사회에서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어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도입된 주민투표제나 주민소송제도가 아직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주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사회가 지나치게 정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도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재덕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3기 제한을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제한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5년에 민선 지자체장 선거의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선 연임 제한을 도입한 취지는 민선 시장, 군수가 지역 토착세력이나 학연 또는 지연과 연계하여 관직을 장기간 독점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한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직에 능력 있는 지역사회 인사들의 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내년도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3선 연임 제한의 폐지를 놓고 찬반 입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3선 제한의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3선 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 여부는 주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는 견해입니다.

반면에 3선 제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3선 제한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므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며, 3선 제한을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의 특정한 공직 독점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의 진출을 제약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들의 정치화를 조장하여 직업공무원제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의 폐지 여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 지방자치의 수준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서 특히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종전에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지방교육 의결기관을 시·도 의회의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배경을 보면,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 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되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 시·도 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으며, 또한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 시비,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의 정치화, 출신 학교별 편 가르기로 인한 교단 분열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원우 의원안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시·도 의회 내에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을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전문개정하면서 당 위원회 소관의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은 시·도 의회 내에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며, 종전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직 금지 대상이었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한편 시·도 의회 내에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서 시·도 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서는 개정안처럼 교육위원회만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종전처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치 근거가 달라서 입법형식에 맞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정안처럼 지방자치법에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 내에 설치할 경우에 교육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인바,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분명한 입장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용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신기남 의원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한글날이 국경일인지 기념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이전에는 국민들이 그날은 휴일로 해서 쉬었는데, 그때 폐지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종합해 보면, 10월 초에 개천절이 10월 3일이어서 개천절도 쉬고, 또 추석이 음력으로 8월 15일인데 그 전날하고 다음날 쉬니까 그게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초나 9월 말 정도로 돼 가지고 결국 10월이 날씨도 좋고 이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는데 공휴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그 당시와 좀 달라진 상황이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않습니다마는 주5일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근본적인 것으로는 과연 한글날을 공휴일로 해야만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의 사기가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직 한글날을 다시 국경일로 지정해서 공휴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거든요. 여기 제안설명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신기남 의원 저는 제안설명서에 사실은 그 부분도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자화된 제안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까 조금 부가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공휴일 수하고 국경일을 반드시 같은 차원에서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휴일 수를 얘기하는 의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신경을 전혀 안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휴일은 사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정하는 것입니다. 식목일을 하든 국경일을 하든 추석 연휴를 늘리든 줄이든 설날 연휴를 늘리든 줄이든 이것은 정부에서 그때그때 사정을 봐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국경일은 법률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어떤 것이 국경일이나 하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법률로 정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휴일로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너무 많으면 다른 공휴일을 늘릴지 줄일지 하는 것은 정부에서 다 국가정책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을, 정부 대통령령의 사항을 국경

일 문제에 미루어 가지고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핀트가 빗나간 것이 아니냐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늘리는 것, 설날 연휴를 늘리는 것이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정하면서 국경일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공휴일 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대통령령은 모든 국경일을 자동적으로 공휴일로 정하도록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태도를 바꾸어서 국경일 중에서도 공휴일인 국경일이 있고 아닌 국경일이 있도록 바꾸려고 거의 성안을 해서 법제처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6월 중으로 통과된다는 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하면 국경일 중에서도 제헌절은 제외하고 나머지 한글날 광복절 개천절만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공휴일이었던 식목일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안으로 이렇게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다면 저희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게 된다면 그 한글날을 공휴일로 할지 안 할지는 정부에서 마치 제헌절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한글날이야말로 가장 국경일다운 국경일이며, 또한 마땅히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어떤 국경일보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유기준 위원 잠깐만요……

○신기남 의원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또 정부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지요. 한글날은 공휴일로 하지 말고 국경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지금 너무 많은 논점을 제가 물어보았고 또 너무 많은 논점을 한목에 답변을 하셔서 논점이 좀 흐려져 있는데, 지금 국경일에 관한 법률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같이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현행 대통령령하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공휴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지 지금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공휴일이 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신 부분은 필 곡해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은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하루 더 쉬게 하고 또 한글날을 국경일로 삼아서 한글의 여러 가지 좋은 뜻을 기리는 날로 삼는 것은 좋겠다고 하겠으나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가 상당할 텐데 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론조사를 해서 다시 제정해야 할 것 같은 공휴일로 66.9%가 찬성하고, 한글날 하루뿐만 아니라 해당 주를 국가 및 문화행사주간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86.4%가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자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100%가 다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휴일이 늘어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신기남 의원 공휴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하고는 좀 차원을 다르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놀게 하고 안 하고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제 생각은 국경일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법률로 정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국경일도 있고 기념일도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 전체의 입장으로 볼 때 공휴일을 며칠로 정하고 어떤 날을 공휴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경일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법률로 정해 놓으면 그중에 국경일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념일 중에서도 공휴일은 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는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 법률을 통과시키면 한글날도 일단 국경일로 되니까 공휴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거기에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국경일로 정해 놓으면, 그래서 공휴일이 많다고 하면 정부에서 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공휴일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주5일 근무하고 상관해서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거의 성안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목일, 벌써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것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그 작업을 해서 거의 실현 단계에 와 있고요. 또 국경일 중에서도 구별을 해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국경일만 공휴일만 하는 이런 내용의, 그러니까 국경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통령령 개정안이 법제처에 거의 다 통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은……

○유기준 위원 자꾸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이 없지 않습니까?

○신기남 의원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6월 중에 거의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따 장관에게도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식목일과 제헌절…… 제헌절도 국경일 아닙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국경일 중에서도 열거해서 어떤 것은 공휴일이고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구별해서 개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성안되어서 거의 공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면 정부에서 한글날은 공휴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간 저희로서는 국경일에 대한 판단을 법률로서 내리면, 공휴일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공휴일을

조정할 때는 조정하더라도 이 한글날 국경일은 그대로 공휴일로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노현송 위원님 먼저 하세요.

○**노현송 위원** 저도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유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경일로 지정하면 또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유기준 위원** 현행 대통령령하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노현송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논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령은 법의 하위법령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 대통령령이 바뀌어야지 대통령령이 있다고 해서 법을 못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헌법과 법과 경과 사이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기남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지금 행자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노현송 위원** 그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국경일로 되어 있는 날이 전부 공휴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5일근무제와 관련해서 국경일이라고 해서 전부 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국경일 중에서도 공휴일인 국경일과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나눌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안을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노현송 위원**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휴일 문제에 한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한글날을 국경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국경일로 정한다면 그것을 공휴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국경일이 공휴일로 되어서 공휴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빈약하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경일에 대한 기준을 보면 전부 건국과 관련된 날이 국경일입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우리나라를 세운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이것만이 국가의 경사가 아니지요. 우리의 문화,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유산은 저는 한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날을 지정하자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휴일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공휴일과 관련시켜서 국경일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신기남 의원의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까라는 지금 세계인이 우리 한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한글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가는 한글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안을 공동발의한 1명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글날은 반드시 국경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공휴일과는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희** 조성래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고흥길 위원님 하시고……

○**유기준 위원**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과 대통령령을 구별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취지로 만일에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저의 인격에 대한 말로까지 들리는데 그 말은 취소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현행 대통령령과 법을 같이 해석해 보면 대통령령이 그대로 있는 마당에 국경일을 하나 늘리면 공휴일을 하나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어떻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논리로서 국민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국경일이 하나 늘었으면 어쨌든 현행 대통령령하에서는 공휴일이 하나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든 간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통령령에 공휴일 해 가지고 11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번째 종류로서 국경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이 하루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공휴일이 하루 안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현실적인 그런 효과를 봐야지. 법과 대통령령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주 인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를 요구합니다.

○조성래 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에 관해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 찬성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신기남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경일은 10년·20년의 단기적인 안목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민족정신이나 민족문화 아니면 우리 역사의 전통 이런 데 비추어서 정말 국민 모두가 경축해야 될 날인가의 여부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소 반어법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산업 여건 이런 것을 생각해서 10월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 없애자, 그리고 나아가서 민족의 글자를 경축하는 예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 이런 이유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글자를 창제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축일이 안 된 것이 아니냐, 글자를 창제한 유일한 민족인 우리가 우리글을 창제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민족을 통합하고 민족정신을 하나로 묶고 우리 문화를 엮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인 우리글을 만든 날을 우리 국민이 무슨 산업공학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휴일이 많고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국경일로 하는 것을 배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공휴일로 하고 안 하고,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어찌고 하는 이런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율할 때 참고하는 사항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정서 국민정신 민족문화 이런 점으로 우리가 크게 생각한다면 이 한글날이야말로 반드시 국경일이 되어야 될 당위성이 있는 너무나 절절한 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리 생각의 근거에 두고 한글날이 과연 국경일로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좀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글날이 국경일로 되는데 전혀 손색이 없고, 국경일에서 배제하는 데 찬성한 과거 우리 국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신기남 의원 위원장님, 제가 또 부연설명을 해도 될까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장 이용희 예.

○신기남 의원 유기준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노현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기준 위원님께서 조금 과도하게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 노현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령을 먼저 생각…… 대통령령에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률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것 아니냐? 너무 공휴일이 많아지니까. 현재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국경일이 전부 공휴일이니까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법률은 우리가 재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는, 그러나 그 점이 걱정된다면……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저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사고를 이렇게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통령령을 맞춰야지요. 선후 관계가 다르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에 국경일을 모조리 공휴일로 두고 있으니까 한글날을 법률에 국경일로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국경일의 의미를 찾아 가지고 법률로서 국경일로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공휴일 수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공휴로 하든 안 하든 또는 다른 공휴일 수를 조정하든 안 하든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저는 선후가 맞다고 생각하고, 노현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 점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령이 지금 그렇게 많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헌절을 제외하는 문제, 식목일을 제외하는 문제…… 또 다른 공휴일이 조정될 수 있겠지요. 현재의 공휴일은 주5일근무를 안 하고 휴일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설날이나 추석 연휴 같은 것을 많이 늘려 놓았다고 봅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계속되리라

고 보고, 현재 제헌절을 제외하는 것하고 식목일을 제외하는 문제는 현재 거의 성안 단계에 와 있어서 오늘내일 곧 실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입니다. 현재는 단순한 기념일이지만, 이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국경일로 지정해 놓으면 이것이 공휴일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국가적인 기념일이 되기 때문에 거국적인 행사를 하게 되고 많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념일로 머무르게 되면 조출하게 해당 부처에서, 말하자면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기념식에 장관이 나오고 그저 세종회관에서 조출하게 기념식을 하고서 말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경일로 승격시킬 때 우리가 진실로 한글을 재대접하고 역사적 의미와 민족정신을 생각하는 그런 효과가 제대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고흥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고흥길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래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면 되는데, 사실 지금 토론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감정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국회에서 구정을 소위 말해서 공휴일로 늘리는 문제를 놓고 당시 김영광 국민당 사무총장하고 여야 간의, 또 국무회의에서는 당시 장예준 장관하고 총무처 간의 몇 년에 걸친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구정을 공휴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정을 공휴일로 하루 늘림으로 인해서 산업적으로 또 수출 전략 면에서 엄청난 손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당시에도 구정이 우리 고유의 설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하루 늘리는 데 그렇게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금 신기남 의원께서 제기하신 한글날 문제도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 16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겁니다.

특히 지금 이것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문제가 16대 때보다 더 어려운 점은 토요일무제가 실시되어서 7월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상당히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하루를 노는 게 아니라 이게 주말, 월요일에 걸린다든지 금요일에 걸리게 되면 3일 연휴가 되어 버립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지

만 3일 연휴가 한 번씩 생기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3일 연휴가 생기게 되면 그 달의 수출 실적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에 대한 자랑과 민족적 긍지를 위해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는 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 국민이라면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한 가지 가치에만 몰두해 가지고 이것을 입법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왕 얘기가 나와서 설사 국경일로 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서 지금 제헌절이나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하자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정부가 대통령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것은 찬성을 하되 국경일도 공휴일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그때 우리가 이것을 지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기념일에 대한 추이를 보고 국경일도 공휴일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는 이게 성립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국경일로 지정을 하고, 현재로서는 국경일로 되면 자동적으로 공휴일이 됩니다. 국경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그만큼 하루씩 노는 날이 많아지고 주5일제 실시로 인한 산업적인 손실과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헌절이 제외된다거나 개천절이 제외된다’ 이렇게 국경일도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게 확실할 때 우리가 굳이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되 그것은…… 지금 제안자 입장에서는 공휴일로 꼭 해야 된다는 소신을 밝히시는데 한글날을 꼭 국경일로 제정하면서 공휴일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지정하고, 그때 그것을 넣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정부 측에 맡기고 일단은 국경일이 자동적으로 공휴일이 되지 않는다는 선례, 대통령이 개정된 다음에 우리가 국경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입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재창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경일을 제정한 취지는 ‘절’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한 네 가지 날…… 국경일을 보면 건국이라고는 하는 것, 정말 나라의 경사에 대한 개념을 건국으로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을 국경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존 국경일의 개념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검토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둘째로 공휴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행체제로 봐서는 당연히 국경일로 해야 뜻이 살아납니다. 공휴일 문제가 비록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국경일과 공휴일 지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하고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되 이 문제는 일단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일단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경일에 대한 콘셉트가 다시 정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한글창제를 우리 민족의 아주 커다란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영원히 기려야 된다고 한다면 글썽, 이것은 저의 지나친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황우석 교수의 복제기술에 의해서 정말 인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 국민이 개발했다. 아, 그거 국가의 경사다. 그것도 국경일로 정해야 된다’ 이런 논란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다룰 사항이 아니라 정부에서 전문기관 또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경일과 공휴일·기념일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뤄 가지고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우리 위원회에 계류를 시켜 놓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서 만약 필요하다면 정부 제출 개정법률안을 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유기준 위원님! 참고로 신기남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2004년 7월 15일자인데 그때 67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서명한 의원 중에 김충환 의원님, 노현송 의원님, 박기춘 의원님, 유기준 의원님, 우제항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행정자치위

원회에서 단 일곱 분만 여기에 서명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찬성이나 반대나 관계없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고 그것이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주는 역할인데 다른 쪽으로 논의의 방향이 전개되어 가지고, 사실 제 의견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원래 그런 생각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 사이의 토론이 이렇게 치열하다 보면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위원장 이용희**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작년 일이니까 잊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 것이지요.

이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이인기 위원** 국경일에관한법률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49년 10월 1일 만들어졌는데 제1조에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경일을 정한다.”고 했고, 제2조에 “국경일은 좌와 같다.” 해 가지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 법을 만든 분들이 국민의 뜻을 모아서 4대 절을 국경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에 비추어서 특별한 국민적 합의 내지 변수가 없는 이상은 국경일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경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날도 공휴일로서 얼마 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현행법 체계상 국경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은 정부수립 이후에 즉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취지상 법률에서 국경일로 정해지면 당연히 공휴일로 되는 것이고, 법률로 정해진 국경일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휴일에서 뺀다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중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국경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공휴

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론 상으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의 자의적인 운용과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셨는지 신기남 의원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을 설명하시면서 현충일을 공휴일에서 빼려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기남 의원** 그것은 얘기하지 않았습시다. 식 목일하고 제헌절하고……

○**이인기 위원** 아까 항목 나열할 때 현충일도……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현충일 얘기는 하지 않았습시다.

○**이인기 위원** 아까 현충일도 분명히 들어갔는데,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을 침삭을 하더라도 현충일에 관한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현충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시다.

○**양형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토론이면 족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권오을 위원님!

○**권오을 위원** 양형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경일에 관한 사항은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든 계류시키든 결정을 했으면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하는데 공휴일로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발의한 의원님이 세 분 다 안 계시기 때문에 행자부장관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가 논의되면서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다른 선출직과의 형평성 문제

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다른 선출직이라고 하면 대통령 국회의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에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내용으로—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내용으로—백원우 의원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오히려 더 독립시켜서 교육감도 직선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정부부처에서는 여태까지 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심재덕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단체장의 3선 연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3선 연임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3선도 겁니다. 실제로 연임으로 제한하고 더 하고 싶은 분은 한 텀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역 소단위에서 한 8~12년 해 버리면 공무원의 사병화가 굉장히 추진됩니다. 그 자체가 지역 자치단체의 활력을 잃게 하고 1인의 독선·독단이 횡행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오히려 3선 연임도 길다, 재선 연임으로 제한하고 한 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해 드리면서, 그리고 헌법위배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현소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미안합니다. 답변을 잠깐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일과 관련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으니까, 또 신기남 의원께서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하니까 일단 보내 드리고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현승 위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유기준 위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다만 그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과 영과 관련해서 구조상으로 볼 때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개인의 인격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희** 노현송 위원님 말씀은 고마우신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조금 거북하더라고요.

○**노현송 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장관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우선 주민소환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민선자치 10년을 종합평가하면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그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득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문제는 아직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틀 속에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언론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별도로 법률에 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문제는 개인적으로 권오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고, 세 번을 하면 결과적으로 12년을 하게 되는데 12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특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틀과 운영 모든 것이 고착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인재가 계속 나오는데 새로운 인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또 지방자치선거를 할 때 보면 기존의 자치단체장하고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엄청나게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봐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민선자치 10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정부 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유정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정복 위원** 시간 관계도 있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정치 관련법—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선거법—들이 국회개혁특위하고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3선 연임 제한 문제도 여야 간에 지금 상당히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개혁특위나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줄여서 짚막하게 핵심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선 연임과 관련해서 행자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허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폐지해야 되느냐, 물론 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방자치 문제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그 본질에 충실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행자부장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문제를 극복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이루어져야지, 자치단체장이 3선 연임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연임으로 문제를 줄여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절대 지방자치가 육성·발전되지 않습니다. 그 시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육성·발전시키고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행자부의 아주 본질적인 임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도 있겠고 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시각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아마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하고도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장관님께서 지방자치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는 저도 최고의 관심을 갖고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쪽에서 작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 소신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양형일 위원님!

○**양형일 위원** 존경하는 유정복 위원님 견해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의 역사·정치·환경적 토양 이런 것도 심분 고려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의 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시다마는 권오을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사실은 교육인적 자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분이 여기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지 안 나오셨는데……

지금 이 안대로라면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현재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의 특수성·전문성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발상보다는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행하는 기능이 대단히 제한적이고 시·도 의회와 중첩적인,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이 다시 시·도 의회에 가서 재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런 중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내용대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완전히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지금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 운영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을 지켜줘야 되지만 구태여 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반

드시 한 법에서 규정해서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이 법 외에 특별법에 의해서 시·도 의회에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규정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맞지 않다, 시·도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형일 위원** 법률의 형식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에 관한 문제이고요. 우리가 어떤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차선의 문제이고, 내용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도 의회의 예속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교육과 학예에 관한 독립적인 심의 의결 기능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법안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구에 관한 문제들이니까 추후에 논의되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양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위원님…… 그다음에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홍미영 위원** 오늘은 올라온 안건에 대한 대체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제 의견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날의 국경일 제정에 관해서는 신기남 의원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어서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동남아권으로 나갈 때 제 뒷자리에 앉은 부모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애 같은데, 동남아가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도 아닌데 영어를 쓴다는 이유로 데리고 가면서 ‘가서 영어만 배우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고, 또 지금 강남 쪽에서는 아이의 혀를 수술해서까지도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국민들의 강박관념, 한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부분을…… 좀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병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민소환제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가 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행자위에서 거기에 대해 논의를 잘

하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지방자치 10년을 평가한다지만, 저도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능력을 그만큼 향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어제 제가 참석한 지자체 선거와 관련한 심포지엄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강남구청장이 시·구의 감사만 받지 중앙정부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선포 비슷하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시민의 견제역할, 주민의 견제역할이 강화되어야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병문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에 민선자치가 시작된 뒤로 4명 중에 1명의 자치단체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또 단체장을 감독해야 될 지방의원들이 불과 6년 사이에 224명이나 사법처리된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이나 중앙정부의 감사에 반발하는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언급을 하고 싶고요.

대신에 남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지역에서의 어떤 정파적인 우려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지병문 의원 법안에 보면 “소환요건과 방법·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내놓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장관님, 주민소환제에 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다른 의견은 없고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시기에 어떻게 채택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정부 내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미영 위원** 지병문 의원님이 내신 이 법안에 소환 방법·절차를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제가 지방분권을 진행하는 중에 꼭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장 3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다른 얘기를 언급하기보다는 설사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직 장수하고 있는 단체장의 연임을 가능하게 한 장치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법 시행일 당시의 자치단체장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칙이

들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우선 상정되어 있는 세 안건 중 지병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주민소환제 관련 내용에서 주민소환제가 타당하나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념상으로는 이미 주민의 통제 방법으로 주민소송제나 주민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도 언젠가는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둘째로는 이 법안 제13조제3항을 보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이라는 것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또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환요건·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주민투표라든지 주민소송제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야 심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용이 구체화된 법안이 나와야만 다룰 수 있다, 단순히 근거만 뒤 가지고 하는 것은 법체제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둘째로 심재덕 의원께서 제기하신 3기 제한 폐지 문제는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제출해 냈지요. 물론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이 나오겠지만 이것도 제도의 타당성 문제 이전에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방자치제가 얼마만큼 정착되어 가고 있고 또 주민들의 지방자치 기반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도의 타당성 여부 문제가 아니라 채택의 시기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논리적으로만—이론상으로만—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정부 측에서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단순히 이리이리해서 곤란하다가 아니라 그간 지방자치를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석한 내용으로 봤을 때 만약에 3기 제한 규정을 폐지했을 경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국회의원들께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것은 논리로만 판단하기에

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에서 좀 더 깊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백원우 의원께서 제기하신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오랜 숙제인데 이 문제도 논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치와 교육의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그런 제도와 아울러 오히려 이제는 일반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길을 터놓고 그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래 위원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입장이 교육자치하고는 다소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자치에 있어서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 그 위원회의 명칭에 구애되어서 시·도의회 의원회의 위원회하고 같은 격으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 의회의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육위원회 아니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의결기관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치는 교육문제에 관해서 독립된 권한을 가진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양형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도나 시, 광역시의 권한에서 독립되는 것이 더 옳은 입장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의원의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행자위원회에 의견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저는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연석회의든 부서 간 공청회 비슷한 의견 수렴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제가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담당하면서 항상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때 한

편으로 백원우 의원의 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받아오는 부분, 또 교육부나 해당 쪽과 같이 연석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참고하겠고 이 시간까지는 아직 보고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최규식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백원우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가지고 상정·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법률은 교육위에 계류 중인 법률이 통과된 후에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해도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법 관련 절차법이 지병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된 후에 지방자치법에 선언규정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말씀하실 분…… 유정복 위원님!

○유정복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제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고, 행정자치부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반대하십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민주주의나 지방자치하고 관련해서 흔히 기관이나 단체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가지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소환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만 소환합니까? 국회의원도 소환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국회의원은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런 취지입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제도예요. 그렇지만 인류가 발견한 현재의 모든 제도 중에서 가장 낫기 때문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폐단을 어떻게 극복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행착오 기간을 줄여 나가느냐 이것이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궁극적인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무엇이나 하면 국민이 판단하고 주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려고 인위적으로 통제를 가하려는 것이 바로 과거의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론입니다.

특히 장관님이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방자치 육성·발전에 대한 기본틀이 무너지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방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3기 연임 제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환제를 비롯해서 지방의 회의원 문제 등 엄청나게 많은 문제에 있어서 기본 시각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오랜 동안의 지방행정 경험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 온 사람으로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형일 위원 존경하는 유정복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실 분들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단지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으로 제시된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확장시키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판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선 연임에 제한을 두는 것이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예를 하나 들립니다. 저희하고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단체장 임기를 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위원 미국이나 일본의 예는 어떤지 아십니까?

○양형일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의회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대부분 카운슬 메이어 시스템(Council Mayor system)하에서 그것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위원 주마다 제도가 다 달라요.

○양형일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미안하지만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 의사에 반대합니다. 유정복 위원님 뜻하고 같습니다. 왜 제한을 두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갈 길이 바쁩니다.

김충환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김충환 위원 제가 윤리위원회 때문에 조금 늦게 와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3선 제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한을 없애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 제한을 두는 경우 또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 재선으로 한정하는 경우는 대통령의 경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통수권 또 검찰·경찰권 등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법이나 헌법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제한하는 기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볼 때 꼭 법에 이것을 규정할 필요는 없고 다른 나라의 예도 보면 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선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발전되면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는 여지를 두는 의미에서 이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모든 기관장, 대표들의 임기를 정하는 이유는 그 임기 동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둡니다.

저도 단체장을 해 봤습니다. 3선을 하고 연임이 되어서 4선을 해 보았는데 4선 때부터는 거기에서 나올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엔조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선 1기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현재까지 3선으로 해 놓았으니 3선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연장하는 것은…… 그때부터 코스트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됐어요, 그것이야 개인 생각이니까요.

원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원혜영 위원 현재 3선·재선까지 연임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원수, 비율 이런 것을 통계치로 가지고 계신가요?

○김충환 위원 32명이요.

○원혜영 위원 총 234명 중에……

- 유정복 위원** 광역까지 250명입니다.
- 원혜영 위원** 250명 중에 현재 3선이 몇 분입니까?
-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3선으로 된 곳은 광역단체장 중에서 두 군데이고요, 기초단체장이 29군데입니다.
- 원혜영 위원** 234명 중에 29, 약 십이삼%……
-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둘 다 전부 12.4%입니다.
- 원혜영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3선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보통선거 때 바뀌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3선을 하신 단체장이 김충환 위원님 한 분인가 두 분……
- 김충환 위원** 4명 정도 있습니다.
- 원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지방정부들이 자기들 자체의 규칙,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성숙한 국민 수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희**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 그러면 미안하지만 1항에서 5항까지는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정부 제출)

7.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정부 제출)

8. 地方財政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9.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정부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등 4개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자치단체 계약은 대부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어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을 분법(分法)하면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지방계약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계약내역을 공개하는 등 수의계약 절차를 투명화하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등도 감독자로 참여하여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도입하고,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 확정 전에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개산(概算)계약 제도를 도입하며, 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특수관계 사업자는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지방기금은 그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사·중복 기금의 억제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할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한 후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전국 차원에서는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재정법은 국가와 달리 지방예산, 회계, 계약, 공유재산관리 등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각 분야별로 지방재정의 특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분법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별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율발행토록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시달제도를 폐지하되 예산편성의 최소한의 기준만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의 재정상태 및 운영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며, 재정분석진단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또는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에게는 보상을 하고,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이행을 권고하거나 지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당해 재산의 운영경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노력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가분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시설의 이용 및 관리를 활성화시키고, 물품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정보 등을 행정자치부 장관과 조달청장이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한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4개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장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습지만 시간 관계상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계약조항을 분리하고 그동안 논의되었던 제도 개선 사항을 담아서 지방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의 연간 계약규모를 보면 약 17조 원이며, 그중 공사계약이 85%에 달하는 15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지방재정법에서 일부만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정비라든가 화훼농가 선정 등 국가에는 없고 자치단체에서만 발생하는 계약유형이 상당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위주의 사업 계약형태가 다양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대상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행 국가계약법 준용체제로는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의 준용이 애매할 경우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일부는 지방재정법령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이원적인 법령체계는 법 집행자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원적인 법률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방계약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 투명성 확대를 제정안은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단 의견으로서는 하위법령에서 대상범위와 공개방법, 절차 등을 규정할 때에 자칫 제도가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위축시켜 수의계약의 장점이 사장되는 계약환경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으로 위촉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마는 비전문적이고 형식적인 참여로 인한 주민참여제를 이용한 새로운 단계의 이권집단이 형성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일부 기금조항을 분리하고 그동안 논의되었던 제도개선 사항을 담아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별도의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정안은 중앙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에 관한 기본법인 기금관리기본법을 그 모델로 하여 대체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하에서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지방기금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와 개별법

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말 현재 198종 2287개 기금 14조 9152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수와 규모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대된 지방기금은 사실상 제2의 예산이지만 기금관리·감독 및 분석체계 미흡으로 재원의 사장, 자금의 횡령·유용 비리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2004년 감사원의 지방기금 감사 결과 지방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이 권고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지방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이 제정안과 같이 독자적인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경우 기금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신속적으로 전입·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반·특별 회계와 기금 간의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행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으로서 마련된 국가재정법안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정안과 같이 지방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법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만큼 법안의 내용이 지방분권의 틀 내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효율적인 기금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설치제한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를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체계가 미흡함으로 인하여 기금사업의 성과분석과 자금운용 등 지속적인 점검·평가와 자금관리모델 개발 등의 기능이 취약

하였으며,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도 전무하여 한번 설치되면 대부분 계속 유지되는 실정입니다.

반면 국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 왔습니다.

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평가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지방기금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먼저 자체적으로 성과분석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결과를 확인·점검한 후에 필요한 경우 지도를 하는 시스템으로 변형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면, 현재 국가기금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국회에 기금결산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기금에 대해서도 성과분석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63년도에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 실시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부분적인 개정을 하여 왔으며, 단일법령의 제정, 계약, 기금 재산물품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함께 혼합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체계의 복잡성, 법 집행상의 어려움,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행 법률체계에 대하여 영역별로 특성을 감안하여 4개 부분(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지방기금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분법함으로써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이와 같은 독자적인 법률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현재의 분권화·자율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도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 도입에 관한 사

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의 정착을 위해서는 그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확보되어야 하고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민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4년 지방예산편성지침으로 지방예산편성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정책 토론회·예산설명회 개최 및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별다른 예산정보 공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주민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직접 참여 제도인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및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하는 통제장치라는 점에서 볼 때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제도가 형식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13쪽,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분석·진단결과에 따른 건전화 이행계획의 권고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권고 및 지도 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으며,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재정결산을 기초로 작성된 재정보고서를 토대로 지방재정운영 실태를 10개 지표로 분석하여 재정 취약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아서 개정안과 같은 제도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2004년 현재 지방재정 중 자체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의 비중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바로 국가전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나는 등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과 재원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효율성 있는 지방재정운영을 보장하되 지방재정의 안전망 및 책임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제도개선이 마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의 권고 및 지도 사항의 이행결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교부 목적 및 기준과 감액기준 등이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그리고 보통교부세의 불교부단체와 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안은 총 99개 조문 부칙 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에서 조문 정리 및 원문을 인용한 기존 조문이 56개 조문, 법규정사항임에도 시행령 및 조례로 규정된 내용을 법으로 정리한 내용이 22개 조문, 물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내용으로 물품관리법 내용을 준용하여 새롭게 신설한 조문이 21개 조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제정안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체계를 기본골격으로 하면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법령 체계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자적인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입니다.

2003년도 현재 공유재산은 총 142조 7075억 원이고, 물품은 총 4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한 관리 및 운용은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기본원칙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법령체계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관련 법규정이 분산 나열됨으로써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미비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재산관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요인이 상존하였고, 공유재산관리를 통한 수익창출의 노력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제정안은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분법하여 재산 종류별로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하는 등 단순명료하게 법안을 정비하여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제정안의 내용이 분권화·자율화 방향에 부합하고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와 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용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 먼저 손 드는 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웃음)

○**이재창 위원** 어떻게, 단일 법률로 하시겠어요, 4개 법률을 한꺼번에……

○**위원장 이용희** 4개 항을 한꺼번에 상정해 놓고 질의하시자고요.

○**이재창 위원**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장 이용희** 그냥 간단간단히 같이 다 하시지요. 이제 벌써 12시 15분인데요.

○**이재창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시지요.

○**위원장 이용희** 오후에도 또 14건이나 있는데

요.

○**홍미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오후에 안 하고 그냥 오전에 다 끝낼 거예요?

○**위원장 이용희** 이것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떨까요?

어떠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어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요?

○**이재창 위원** 글썽요, 안 하면 안 했지 말하다 보면……

(웃음)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편리한 대로 하시라고요. 오후에 오셔서 질의하시든지, 편한 대로 하세요. 지금 12시 15분이시지요?

○**김충환 위원** 오후에 좀 일찍 시작하지요.

○**이재창 위원** 식사를 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이 4개 항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에서 속개해 가지고 여유 있게 하시지요.

○**이재창 위원** 예, 그게 좋겠습니다.

○**유정복 위원** 오후에 하면 자꾸 더 길어지니까 오전에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속개 시간을 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희** 가만, 정개특위가 또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거기 몇 분 빠져나가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유정복 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속개 시간을 정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오전 시간에 축약해서 위원들이 말씀하실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후에 속개 시간을 정하면……

○**이재창 위원**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그냥 대강 훑어보는 식으로 심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안전별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홍미영 위원** 저는 안전은 안 하더라도 시간은 봐서 앞으로 한 시간은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효율적인 것은 차라리 식사하고 뒤에 한 시간 반 정도……

○**위원장 이용희** 지금 12시 15분이 지났으니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정회하고,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해서 좀 철저하게 토론할 것은 토론하시는데, 다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너무 또 길게 중언부언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정개특 위원님들은 좀 죄송하지만 2시부터 회의가 있으면 가서 하시고, 어차피 양립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용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 때 이재창 위원님께서 안전별로 대체토론을 철저히 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회의의 능률성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송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예,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지요.

○**노현송 위원**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정부 측에서 넥타이도 풀고 여름철에 맞게 나오신 것 같은데 물론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될 것을 주장하시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회의라는 것이 꼭 재킷을 입어야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더운 날씨에 본인이 더워서 견디기가 힘든데 굳이 이것을 입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입어라, 마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답다고 느끼면 자율적으로 웃웃 정도는 벗을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민주적으로 하시자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국회법상에 강제적으로 꼭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회의 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른 한두 군데 위원회에서 넥타이 풀고 한 데가 있나요? 누가 그런 말씀 했던데, 저는 위원님들의 뜻을 좇아가겠습니다.

○**金洪春 委員** 이것은 토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노현송 위원님 의견에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

됩니다. 저는 벗어도 좋고 또 각자 알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회의도 벗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데 다만 벗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엄숙한 일을 할 때는 목욕재계하고 의관을 정제했습니다. 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벗어젖히고 하면 좀 신중치 못한 듯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절히 알아서 하시되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좋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재창 위원** 저도 국회의원한테는 넥타이 매고 정장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고 작업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지역구에서 시장통에 갈 때 잠바 입고 가면 ‘당신은 우리를 만날 잠바 입는 사람으로만 대접하느냐’ 하고 외려 불쾌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오랜 관행이 설정되었다면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에너지 절약 면에서 국회 전체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 하나 벗었다고 해서 전체 에어컨 돌리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꼭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너무 편의적으로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서병수 위원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서병수 위원** 저는 드릴 말씀도 있고 의견이 조금 다른 점도 있긴 합니다마는 너무 한꺼번에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그치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시중의 좋은 골프장에 가 보면 전부 다 양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식하고 영국식 골프장 이용이 다르던데 미국은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아무 옷이나 입어도 출입을 허용하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역사, 전통, 인생관, 세계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겠는데요.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일반 시중에서 하는 식으로 국회가 흐른다면 우리가 똑같은 취

급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신성한 주권을 논하고 입법행위를 논하는 자리라서 의관을 갖추고 그에 맞춰서 정신을 가다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고흥길 위원님 어떻습니까?

○**고흥길 위원** 각자 자기 양식에 따라서 하는데요, 역시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 그런 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정장을 하는 것이…… 행정부야 행정부대로 내규가 있고, 하복근무지침도 있고 하니까 행정부는 행정부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정장을 하고, 그러나 본인 양식에 따라서 입는 것을 누가 입어라, 마라, 벗어라 하겠습니까? 위원장의 허가사항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 저도 김기춘 위원님이나 고흥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품위와 권위 문제거든요. 본인들 스스로 자기 양식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고 본인들이 적절히…… 어떤 분은 열이 많이 나서 똑같은 것에도 감지도가 빠른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저처럼 유학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는 사람은 의관을 지키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이게 강제할 문제는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기로 하지요. 강제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서재관 위원님 어떻습니까?

○**서재관 위원** 말 안 하렵니다.

○**위원장 이용희** 조성래 위원님!

○**조성래 위원** 의관을 정제한다는 것, 그리고 격식을 갖춘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이재창 위원님께서 법조인이나 성직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격식을 갖추기 위해 제복을 입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변호사들도 더울 때는 남방을 입고 법정 변론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사를 한 10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더우면 재킷 다 벗어 버리고 넥타이 하나만 매고 들어가서 법정에서 재판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달리 보면 다소간 권위주의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난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제복의 틀을 탈피하는 것도 우리가 열린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김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격식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재량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하듯이 재킷은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는다는지 이런 것은 허용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각자 다 자기 취향에 맞도록, 원래 깔끔한 이들은 잘 때도 넥타이 매고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까 묶고 싶으면 묶으시고 풀고 싶으면 푸시는데, 행자부 장·차관이 넥타이를 안 매고 나오니까 지금 시비가 걸려 있다고요. 저기도 묶고 나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병수 위원** 혹 떼려고 하다가 혹을 붙였습니다.

○**金洪春 委員** 행정부도 국회에 나오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국회에 오면 국회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 벗으면 같이 벗고, 우리 매면 같이 매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좋은 말씀인데, 장관 재량에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 행정부가 전부 다 넥타이를 안 매는 모양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김충환 위원** 지금 대체로 의견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의관을 너그럽게, 보통 양복 위의 것을 벗고 있는 것이 서양에서 그렇게 나쁘다고, 예절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어떤 위원이 옷을 벗었을 때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도록 편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넥타이를 매고 풀고 하는 문제하고 상의를 입고 벗고 하는 것은 위원님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노현송 위원님, 이해하시겠지요?

○**노현송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좀 벗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려다가 못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지요.

○**이재창 위원**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주민참여감독자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과거에도 주민들을, 특히 새마을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참여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로 정착될 때는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고 의무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도 현장에서 법상 책임을 져야 될 감독하고 소위 주민감독자하고 충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공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명시해 주고 또 주민감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대개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규정을 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는 주민감독자도 나중에 공사감독자하고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규정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도 과거에 사실상 법에 허용은 안 되었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산계약제도의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로 봤을 때 개산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공사가 그 금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경우에 다시 하기 귀찮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서 부실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개산계약을 하려면 그 요건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이라는 제도보다는 최종계약은 정식계약으로, 이것은 개산계약이고 나중에는 정식계약으로 하는 제도를 차라리 도입하면 정산이라는 것보다는 보다 책임 있게 다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을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간에 현장에서 어려웠던 점, 특히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데의 발주 애로사항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만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장

치를 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효과 이상의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지금 법에서는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했는데 사실상 계약심의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할 것이냐, 심의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적어도 법에 명시되는 것이 구성과 운영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의기준을 법에서 대강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든 어쨌든 심의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이상 세 가지……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사실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거든요. 법에는……

○**이재창 위원** 법에 적어도 뭐 뭐를 한다는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원칙을 정하는 것은 한번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이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서재관 위원 말씀하시지요.

○**서재관 위원** 서재관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하신 내용인데 주민참여제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이 주민대표를 참여시킴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한다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자칫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선임이 되어서 한다면 오히려 계약내용을 해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지방의회 권한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지방의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물론 지방의회의 물론 책임성 확보가 되지만 구체적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제를 해 주면 견제장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이재창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하고 운영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김충환 위원님!

○**김충환 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 그밖에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지금 현재 구의원·군의원 이런 사람들의 부인들이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립 어린이집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영리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익이 적기는 하지만, 월급을 받으니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다 농사를 지으니까 농산물 이런 경우에 그 자치단체가 그것을 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는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영리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자선사업을 하는 것을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해석을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데, 이권이 관련된 데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법에서도 대개 그런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러면 일반 상거래를 그 자치단체와 일체 못 하도록 하는 경우가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계약행위에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모든 상거래는 계약행위가 들어가겠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일반적으로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거래는 해당이 안 될 것이고요, 사업을 한다든지 결정을 할 때 계약에 참여하고 하는 데만 안 됩니다.

○**김충환 위원** 입찰 같은 것……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공사나 대형 물품구매나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참여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법을 따로 하기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원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혜영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시다마는 헌법 제13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상치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그런 경우에 다른 법률에서도 배제하는 입법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헌법상에 저축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력남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율성의 원칙과 시민통제의 원칙을 가지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있었던 3선 연임 금지도 결국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그런 데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나 단체장이 토호세력화하거나 토호세력과 결탁되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지방자치의 어떤 가치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손상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유효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이것을 좀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토착비리형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폭넓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서병수 위원님!

○서병수 위원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 밖에 이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의사결정권자에게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아니면 직계 존·비속이 영향을 미쳐서 뭔가를 오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공개입찰 경쟁을 하는 경우까지도 제한을 한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방의회 의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무보수·명예직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나 그 배우자가 무슨 음식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업을 위한 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지역 안에 살다가 보면…… 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공개입찰 같은 것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통상 지방 계약과 관련해서 비리혐의로 해서 보도된 예가,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은 아닙시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또 지방의 경우에는 항상 서로 밀착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뒤통을 해도 그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서병수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계약인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개입찰 경쟁에 의해서 수주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지자체 입장에서 가장 득이 되는 사람한테 일거리를 주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뜻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서 위원님, 이런 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상황이라면 괜찮겠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에는, 이 계약질서가 정립될 때까지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서병수 위원 공개입찰 경쟁에 대해서 실시해주세요. 공개입찰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요구를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조성래 위원 실제로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비리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주로 사전담합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직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했으니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가능한 한 생길 수 있는 모든 비리나 탈법 이런 것을 견제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봐서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담합행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통한 낙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빚어진 게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막겠다는 것이 그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김기춘 위원님 하시고 최규식 위원님 하세요.

○**金洪春 委員**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항4호에 “지방의회 의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해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했습니다. 배우자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대충 어떤 사람들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지금 누구를 여기에 넣으려고 하는 건가요? 형제·자매를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신고대상이 되고 있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범주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金洪春 委員** 제가 이 조문을 보면서 지금 조성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에서 여러 가지 계약을 둘러싸고 낙찰 이런 것을 위요하고 있는 토속비리, 토호들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의원이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조달청의 무슨 입찰을 못 한다는지 그런 조항은 없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金洪春 委員** 그런데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 본인이 사업을 못 하게 ‘너희 청렴해라’ 이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멀리 있는 친·인척이나 무슨 계열사까지 이렇게 못 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 비슷하게,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할까 그런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것이 또 평등권…… ‘국회의원의 친·인척이나 무슨 계열사의 사람들은 다 국가를 상대로 계약도 하는데 시골 지방의회 의원이 못 한다는 말이나’ 하고 문제 제기를 할 때 이것이 헌법의 평등권 위배 아니냐 하는 문제점

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것이 법으로 되었을 때 헌법소원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막아 낼 도리가 있겠는가? 이런 점을 앞으로 소위 검토과정에서도 깊이 심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무한정 시의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때문에 내가 사업도 못 하겠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 헌법 위반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사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일단 규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金洪春 委員** ‘법으로 일체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없으니까……

○**조성래 위원** 간접적으로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국정 전반에 관련된 국사를 논의하는 국회의원들은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계약을 못 하게 한다’ 이렇게 국가와의 계약을 전체적으로 못 하게 규제하는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윤리법의 고지제도 같은 것이 그런 의미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金洪春 委員**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가령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의인데 우리 형제나 누가 건설업을 한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서 무슨 관급공사가 생겼다’고 할 때 그 사람은 가서 말하자면 입찰도 해야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되는 사람은 못 한다는 조문이 결과적으로 되고 보니 이런 불평등성을 제기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일단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위원님,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적인 면에서 위헌 여부나, 법률의 평등성에 위배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 검토를 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 결정권과 집행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은 혈연이나 학연 등 모든 인과관계는 아주 밀착되어 있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 제공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국가 업무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거의 20% 가까운 사

람들이 건설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착될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金洪春 委員** 그 취지에는 찬성한다니까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최규식 위원** 저도 이 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춘 위원님이 국회의원의 경우를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지금 제한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장관이나 차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장관께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최규식 위원** 거기에도 같은 규정을 두어서 법 취지를 형평성 있게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의 경우에만……

○**최규식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하여튼 그 문제는 정부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식 위원** 지금 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만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 발주하는 사업의 결정과 관련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충분히 더 있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영리업무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규식 위원** 아니, 본인은 영리업무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영리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법 취지는 찬성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령 관련 공무원,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의 주식백지신탁제를 얘기할 때도 어느 부처는 딱 급수만으로 될 일이 아니어서 오히려 폭을 더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희** 말씀하세요.

○**이재창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요는, 지금 33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이게 사실 내용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지금 행자부가 생각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게 다 망라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차라리 여기에 명시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물론 포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더 구체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법률에다가 일단 규정하는 방안이 좋겠다, 그러면 심의할 때 지금 다른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일단 걸러지지 않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강창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창일 위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죽 봤더니 대통령령에 너무 위임한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에서 큰 것을 정해 주고 자질구레한 것은 지방조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넘길 수도 있는 것을 거꾸로 대통령령에 전부 위임하고 있어 가지고…… 대통령령이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법의 운영에 있어서 대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은 법에서 정하지만 절차와 기준에 관련된 사항들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법에 다 규정해 놓으면 좋겠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법을 변경해서 대응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강창일 위원**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알겠는데 오히려 지방의회 조례로 넘길 수 있는 것을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구체적인 것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면 오히려 중앙정부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겠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문제인데 큰 부분은 법에서 정해 주고 세세한 부분은 오히려 조례로 넘겨주는 것

은 불가능한지?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국이 공통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준칙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통일되게 정해 줘야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해야지, 조례로 다 해가지고는 법의 시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강창일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재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죽 보세요, 너무 ‘대통령령’ ‘대통령령’ 하고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한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사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법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시행령에 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고 필요한 것을 지적해 주시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래 위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체계상 법에서 바로 조례로 넘길 수 없습니다. 위임입법의 형식이라도 대통령령으로 넘어갔다 거기서 조례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지, 지금 장관님 말씀처럼 일정한 준거가 탄력적으로 세세하게 규정될 부분인가 여부를 판단해서 지금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인데 아까 이재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에다가 중요한 부분은 명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요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할 부분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기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 위원** 우선 기금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 규정한 것 중에 새로 통합관리기금과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설치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재원 자체입니까, 아니면 자금에 대한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자금의 문제입니다.

○**이재창 위원** 그렇다면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일시차입식으로 하는 것 인가요? 개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창 위원** 그렇게 하세요.

○**행정자치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지방재정기획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상황을 보면 전체 운용규모가 연간 한 15조 원 정도 되는데 8조 원 정도가 특정한 사업에 쓰이지 않고 매년 여유자금으로 이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들에서 예탁을 받아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지방채 발행할 것을 대신 이 자금에서 돈을 돌려쓴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재창 위원** 지금 취지가 하도 기금이 많아 가지고 운용상 혼선도 빚고 또 어디는 남고 어디는 모자라는 등등을 잘 통합 관리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또 하나의 기금을 만들 필요 없이 지금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기금의 돈이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기금의 운용에서 지금 여유자금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거기서 살려 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굳이 또 하나의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고요.

그다음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문이 생기는데,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기금이 남아서 자치단체 간에 통합해서 운용하는 기금이 사실상 있어요, 아니면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재창 위원** 이것이 비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을 별도로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왕에 여유자금이 많은 기금에서 예치를 받아서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창 위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그런데 지금 국가의 경우에도 기금의 여유재원을 모아서 통합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그것을 벤치마킹한 것이고, 어쨌든 관리 측면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비록 기금 하나가 더 늘어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재창 위원** 저는 굳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유 있는 기금을 필요한 데서 쓸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구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위원님, 이런 취지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남아 있는 자금을 통합관리해 주면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창 위원** 이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자치단체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자치단체 내에 여러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에서는 돈이 남고 저쪽에서는 좀 모자랄 때 그것을 합쳐서 또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이재창 위원** 그것은 지역발전협력기금이 그런 것이고 통합관리기금은 자치단체 내 얘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맞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금관리법을 새로 만드는 취지가 이것저것 기금 만든 것을 좀 줄여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것인데 단순히 여유 있는 것

둘러쓰기 위해서 또 기금 만들고, 그리고 지역발전협력기금처럼 자치단체 간에 하다 보면 또 조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어떤 면에서는 각 기금별로 남아 있는 자금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면 그것이 오히려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금 하나가 늘어난다는 차원보다는 전체적인 운용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지역발전기금 같은 것을 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데 왜 여유자금이 생기는지 아세요? 과거에는 이것의 금리가 낮고 시중금리가 높으니 자치단체에서 많이 빌려 썼는데 지금은 이것의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좀 분석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지 자꾸 기금을 만든다고 해서 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 내 의견이니까 심사할 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계약과 관련한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전국적인 기준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전문성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기금이 좀더 엄격하게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기금 운용성과의 분석 결과, 성과가 저조한 경우 행자부장관이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취지는 필요합니다마는 법령상 “적절한 지도”라고 표현했을 때 “적절한 지도”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적절한 지도”의 내용이 법에 좀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이 법을 집행당하는 사람이 행자부장관이 사후에 무엇을 감독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도라는 것도 행정지도의 개념으로 한 것 같은데 오히려 행정지도의 내용이 있는 ‘권고’라든지 ‘지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체화해 주어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니다. 저희들도 그런 뜻을 담은 것인데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었고, 그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근거는 있지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법에 박아서 넣기는 어렵거든요.

○**이재창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계약심의위원회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법령 간의 형평도 그렇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안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을 보면 행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자체장이 기금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관서에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기금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장관과의 협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의장이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 타당성 심사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좀 고강도의 기금의 타당성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요. 어차피 이런 기금의 조성이 결국은 행정자치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혹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할 때 협의할 사항 중에 타당성 심사와 비슷한 제도를 이 법안에다가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유기준 위원** 한마디로 줄이면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협의’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협의에는 반드시 타당성 심사까지 넣어서 협의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내에 타당성심사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의결이라든지 아니면 조언을 듣도록 하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지 않겠느냐, 이왕에 그런 제도를 고안하셨다면 그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일정한 존속기한이 있다면 선셋제에 의해서 존립 근거나 시한을 다했기 때문에 소멸되어야 마땅한데 실제 운영상으로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넘은 경우에도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금과의 통폐합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국 필요 없는 것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존속기한을 안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고 하면 최장기로 연장하는 경우에 존속기한을 언제까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연장 가능 횟수, 또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도 법률에 한번 둬지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사실 일몰제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 원칙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에서 정했거든요.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경직되게 제한해 놓았을 경우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사실상 법을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것은 원래 법 제정의 의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존속기한을 최장기로 정하는 문제를 일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국민생활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조성하는 기금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원래 기금의 조성 목적이 다 달성되거나 기한이 다 끝나면 폐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관 위원님!

○**서재관 위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조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있습니다.

○**서재관 위원**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등의 제어장치가 있는데 조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어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차별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이것은 통합기금에 관련된 것이고, 조례로 하는 것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서재관 위원**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기금이 남설되는 것도 제어를 못 하면 결국 주민의 피해로 돌아갈 텐데요. 그것도 일정한 제어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일몰제를 도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은 주지만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하게 맡겨 두는 것입니다.

○**서재관 위원**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의 비율이 전체 기금 수의 28%, 금액 기준으로는 41%나 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재정분석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재정의 운용 상태가 어떻게 가느냐, 건전성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유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재관 위원** 우선 그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분석제도…… 국가기금은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서재관 위원** 행자부에는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행자부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지방의회에 통보해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재관 위원** 행자부에서 보고를 받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거꾸로 지방의회에 통보해 준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서재관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방재정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한테 공시까지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어떻게 차이가 있게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재관 위원** 행자부 입장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분석보고를 받는 것은 좋은데 그것과 병행해서 지방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얘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개별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재관 위원** 국가 재정·기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제를 하는데 지방의회는 통제권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정보를 준다는 전제였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분……

○**서병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서 하나의 단일법으로 제정하려는 국가재정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서병수 위원** 게다가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안에는 회계와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상호 전입·전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계와 기금 간의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통합재정의 관점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서병수 위원** 중앙정부는 회계와 기금을 통합 운용하려고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을 딱 만들어 버리면 그런 것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국가기금은 지금 수년간 운용해 오면서 체계와 운용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방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제에 지방 기금에 대한 관리를 해 주고 차후에 가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통합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에 너무 난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그

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서병수 위원** 앞으로 분권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허술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맡겨 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일일이 법까지 만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라는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잘못된, 부실은 결국 국가재정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범위 내에서는 관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성숙되어서 지방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졌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수 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 법안 역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홍미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홍미영 위원님!

○**홍미영 위원** 이번의 지방재정법안의 경우가 분권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정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지방채발행총액 한도제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의 개별승인제를 폐지하고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로 간다는 건 지방재정권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바람직한 건데, 지금 이게 개괄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검토보고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괄적인 지방채발행 한도액 기준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개괄적인 기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미영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담당 국장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위원** 예.

○**행정자치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지방채 발행한도액 기준을 법률에서 정할 수도 있고 시행령에서 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준은 결국 지자체의 채무상환 또 재정상태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도액을 설정하다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산식이 들어가고, 또 지방재정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그걸 시행령에 한도액을 정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법률에 정한다고 하면 채무상환이라든지 재정운영현황 이런 정도로 개괄적인 기준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홍미영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사업을 벌인다면 지방채 발행이 되고 그래서 건전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을 중앙에서 놓칠 우려가 있어서 이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필히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럴 때에도 한편으로는 건전하게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자치단체와 재정위기 우려가 되는 자치단체를 좀 구별해서 전자의 경우는 그런 기채발행의 절차를 좀 간소화하거나, 우려가 있는 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발행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해서 지방 분석을 통해서 정말 불건전하게 운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나 다른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까 합니다. 발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홍미영 위원**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을 넘겨주되 지자체마다 관리를 해 가면서……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를 할 겁니다.

○**홍미영 위원** 예, 그래서 위기가 있는 쪽에 대해서는 발행하는 부분의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는 좀 간소화하는 이런 것이 돼야 자치 운영도 서로 견제되고 보완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제도 폐지되는 것도 이제야 됐다라고 볼 정도로 잘되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도 내부에서 자치단체 편성 기준이 영으로라도 잘 보완될 수 있는 게 되지 않으면 실효가 없는 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을 보면서 원칙적이고 이런 건 좋은데 뒤에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걸 커버할 수 있는 영이라든가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저는 지방재정법상의 채무부담행위와 안 제10조에 보면 보증채무행위가 서로 결과에 있어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도 나중에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 것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와 근본적으로는 같이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에 계상이 되고 또 제35조제2항에 따라서 상환연도 세출예산에도 계상이 되는데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희** 아무래도 실무적인 건 담당 국장이 잘 알 테니까 국장이 답변하세요.

○**행정자치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는 지자체의 직접채무가 아니고 간접채무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한도액을 정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채무도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 심사할 때 그 보조지표로 활용해 가지고 이 보증채무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지자체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사실은 법안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보증채무가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 구별이 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지방채 발행과 보증채무부담행위를 구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김에 만일에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 1년에 얼마만한 금액까지 부담할 수 있는 어떤 실링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채무의 대상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이게 정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인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나중에 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보증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까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조항은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행정자치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 말 현재 보증채무 규모는 한 3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기준 위원** 그 금액이 적은 건 아니지요.

○**행정자치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한 3100억 되는데 이걸 지자체의 어떤 출자기업이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보증을 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증채무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제적으로 OECD라든지 IMF규정에서도 보증채무는 간접채무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유념을 해서 그런 것들은 재정분석·진단제도도 있고 또 공시제도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으로 즉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런 채무 부담을 해야 되고, 둘째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함에 있어서 아주 공정하고 무사하게 의결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겠는데 실무상으로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용으로 막 채무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금 법에는 도저히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어책을 이번에 법을 정비하면서 안에 집어넣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이거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보증의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의 보조지폐로 활용하면서 견제하겠다는 방안, 그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견제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예, 그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자체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몇 회를 하는 것에 관계없이 1년에 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다음에 주채무를 질 수 있는 그 주채무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서재관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 하셨지요?

○**서재관 위원** 예.

지금 예산편성제도와 관련해서 아마 지금까지의 사전통제,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는 것을 안 하고 사후적인 통제를 하고 또 주민 참여를 통한 통제를 하겠다는 게 대강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제도 문제에 대해 보니까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정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민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형해화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주민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우선 지금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나 예산의 우선 사용에 대한 순위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대상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절차를 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는 결국 시행령에 정해야……

○**서재관 위원** 시행령에 넣는데, 대강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있습니다.

○**서재관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주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제39조 규정에 의한 절차는 다음과 같

다’ 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기타 주민 의견수렴에 적합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런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을 정해 주고……

○**서재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 설문조사 이런 것은 사실상 통제로서의 실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서재관 위원** 또 하나는 사후통제방법에서 보면 재정분석·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건전화 이행계획이 제대로 되도록 권고하고, 권고해서 안 들을 때는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서재관 위원** 잘 들은 데는 특별교부세를 더 주고 안 들은 데는 보통교부세를 깎겠다는 얘기인데, 행위 시점하고 페널티 시점이 상당히 격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거의……

○**서재관 위원** 그게 한 3년 걸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단체장이 바뀌고서 페널티가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3년까지는……

하여튼 그것을 단축하는 노력을 기술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서재관 위원** 사실상 지방행정, 특히 예산 이런 것이 단체장 개인에 의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잘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잘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의 행위로 인한 페널티를 잘한 사람이 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그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기술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요……

○**서재관 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분석하고 결과 보고 받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한다고 하면 3년 걸린다고 봐야 된다고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어차피 그 조직의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재관 위원** 사전적인 어떤 통제가 된다고도 봐요. 이런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나중에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사전적 예방도 된다고 보지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예방적 기능과 나중에 또……

○**서재관 위원** 그래도 격차는 좀 줄여 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서병수 위원님!

○**서병수 위원** 지방재정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재정분석과 진단을 실시한다는 목적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거나 또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57조 조항에는 반대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도록 보통교부세의 교부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교부세법 제11조는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 한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는 감액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서병수 위원** 이 조항 등에 따라서 기왕의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와 시행규칙 제5조의3은 각각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으로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예외를 두는 것은 법체계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말씀드릴까요?

○**서병수 위원** 아니요, 제가 다 이야기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서병수 위원** 그다음에 중앙정부 예산편성과 배정권을 무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7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또 위원회와 관련되어서도 지방재정법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 3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56조(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설치 및 운영)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9조에 규정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자문기구는 별도로 설치될 이유가 없습니다. 기왕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나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지방재정과 세제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들이 있으므로 해당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53조의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도 설치할 타당성이 없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맞게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지방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문기구를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1999년부터 회계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9개 자치단체의 시범운영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제19조와 제53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과 지방기금관리기본법제정안,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또 앞으로 논의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안 이런 것들은 현행 지방재정법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것을 영역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이제 4개의 법률체계로 각각 전환시킨 것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서병수 위원** 그런데 이 4개의 법률안이 실제적으로는 사실상 제정법안이고 또 더욱이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맞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제정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은 제정으로…… 물론 형식은 똑같지만……

○**서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반드시 공청회 등을 거쳐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전

체회의에서 토의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교부세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은 교부세의 기본적인 운영 목적에는 그대로 해 주되 그것을 운영하는 기준 내에서 얼마만큼을 줄 것이냐, 교부세가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근본 취지는 살려 주고 그러나 얼마를 줄 것이냐를 판단한 기준 내에 인센티브의 기준을 적용시켜 주면 법의 취지에는 그렇게 위반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부세를 통제의 수단으로 쓰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통제의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재정 운영을 더 건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부분들을 더 줄여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라기보다는 조장해 주는, 또 유도해 주는 정책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총론적 또는 포괄적인 지방재정의 전체적인 운영 틀을 만들어 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이제 지방재정에 대한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든…… 더더욱 국가 복식부기가, 원가개념에 의한 회계체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앙정부도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체도를 지금 도입 추진하고 있고, 지방에서 먼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분법한 것에 대해서, 지금 법의 형식으로 보시면 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개정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형식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쪼개서 그 내용을 보완하는 형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입법절차상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 봤고 다만, 그렇지만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지방과 각 토론회를 거쳐서 충분한 의견수

렴은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최규식 위원님!

○최규식 위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페널티 주고 인센티브 주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오히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처럼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서 법안으로 성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그 방법과 관련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더 주겠다고 했는데, 더 주는 경우는 지금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아시지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현안수요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그러니까 포상 성격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취지를 좀 살리려면 지방교부세법을 바꾸든지 또는 일반 예산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최 위원님, 그것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수요가 발생했든 어떻든 간에 그것을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원해주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안 주면 되는 거지요.

○최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널티를 주는 것이 보통교부세를 깎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의 구의 경우같이 보통교부세를 아예 교부받지 않는 자치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특별히 연구하고 있고 그것이 과제입니다.

○최규식 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것은 교부세 이외의 자금, 국고보조금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서 법 취지가 살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충환 위원** 개정안 제38조에 현행 예산편성 지침 시달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는 할 수 있되 강제성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침대로 안 했을 경우에 나오는 감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너무나 경직화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이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되 그 틀 속에서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만은 정확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물론 그렇지요. 세세항목에 따라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책임을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우선 지방재정법을 분법을 해 가지고 체계를 잡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법을 가지고 운용하는 데 무리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볼 때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게 되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법을 할 때는 기본 원칙을 법에다 규정해 주는, 그래서 비록 분법했다라도 기본 원칙이나 이념이 분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체입법례입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3조(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해 가지고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극히 소극적인 것 아닌가, 그래서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라면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

요한 것이 자주재정으로 장차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재정 운용의 기본을 어디에 두느냐, 주민의 공공복리 소위 수요자 중심의 방향으로 한다든지 뭐가 앞으로 지방재정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기본 원칙이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내용이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최소한도 지방재정에서 강구해야 될 것이 자주재정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재정도 경영적인 마인드를 심어준다든지 또 주민의 공공복리와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기본 방침은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주지 않고 편람을 줘서 일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제38조를 보면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을 보면 “재정 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관련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관련기준이 전으로 치면 편성지침이란 말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용어의 차이냐 아니면 내용에 차이가 있느냐, 일단 제1항과 제2항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제1항과 제2항을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한 조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편성지침은 저희들이 폐지했지만 중요한 부분인 4대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의회 관련 경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경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재창 위원** 그러면 제2항을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번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해 주겠다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제2항에 의해서 종전과 같이 편성지침을 내릴 수도 있어요. 위의 편람은 “할 수 있다.”고 아래의 관련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최소한도 행자부가 편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소위 경상경비 같이 자

첫 낭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든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될 것은 차라리 명시해서 이러한 것은 편성기준을 작성해서 한다든지 하면 위의 것은 총체적인 것이되 이런 것의 경우만은 이렇게 한다고 표시가 될 텐데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항에 대한 내용은 오해가 없도록 표현을 해 줄 수도 있겠습니까.

○**이재창 위원** 이것은 취지에 맞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알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 노조 관계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재창 위원** 그 법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 기관장이 노사협상의 당사자가 됩니다. 지금 행동권은 인정이 안 되더라도 협상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예를 들어서 노조가 가장 주장하는 것이 급여라든지 권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침을 포괄적으로 내려보낼 경우에 각 자치단체별로 인건비 또는 복지와 관계된 비용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A라는 시의 시장과 공무원노조간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우리 급여를 어떻게 하고 복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경우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중앙에서 나간 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각 자치단체 자체에서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아니면 법은 그렇더라도 전국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표해서 중앙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보수는 총액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보수의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개인별 직원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에서 단체협약을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보수 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구체적으로 보수 결정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부터는 경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공무원의 급여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러면 편성 기준을 정할 때 인건비나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경상경비에 대한 것은 정할 수 없겠네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그렇지요.

○**이재창 위원** 그래서 이런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국가공무원도 공무원의 보수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공무원노조가 생기면 노조하고 협상하겠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재창 위원** 바로 그 점을 전부터 행자부에 얘기했던 것인데 현재는 그 보수 규정에 의해서 강원도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급수에 따라서 보수가 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법에 의하면 노사협상을 각 기관별로 하게 되어 있으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물론 노조가 탄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선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준칙은 거기에 따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규정—총액인건비라는 틀과 보수규정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고, 그 수준을 결정할 때 노조와의 협상은 별개로 해야 될 겁니다.

○**이재창 위원** 요는 지금까지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던 것이 노조협상에 의해서 사실상 급여수준이 다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자치단체 급여에 대한 기준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거 안 할 겁니까? 인건비는 몇 % 올린다는지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5%를 올린다는지 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제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그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데 편성 관련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경상경비라든지 특정한 분야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침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데 특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위원님, 그것은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38조제2항의 경우에는 일반예산 편성지침이 아닙니다. 4대 경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이재창 위원** 그런데 여기 법률안을 보세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면 표현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재창 위원** 하여튼 그 취지대로 하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문안을 만들어 보세요. 이 안은 적절치 않아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이재창 위원** 그다음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 데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행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한 사람도 한참 뒤지지 않으면 무슨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실현하려면 우선 성과주의예산체제로 바뀌어야만 주민참여에 대한 의미가 있지 예산서 갖다가 주민한테 보여 줘 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민참여도 괜히 주민에게 ‘참여시킨다’ 이럴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지금은 품목별 예산구조지만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기준을 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재무회계의 결산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용역을 계속 주면서도 아직도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자치단체 중에는 용역을 해 가지고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매우 생소하고 사실상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재무회계의 결산에 이것을 바로 도입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주의 체제를 발생주의로 바꿔 가지고 하려면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령으로 이것을 규정하려면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를 같이 규정해서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교부세 관계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을 보면 통합기금의 논리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언적인 규정으로 한 것 같은데 제2항에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고 한 것을 보면 하라는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막연하게 통합지출을 하는 것은 회계상 매우 위험성이 있다, 지금 기본 회계제도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제도를 갑자기 도입하려면 여기에 따른 위험성과 부작용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도입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관과 회계책임자를 전부 분리해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했을 때 과연 적정한 것이냐, 통합기금의 착상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현행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유기준 위원** 행정·보존 재산 위탁관리 시 재산이용료와 위탁보조금 간의 상계허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을 겁니다. 행정재산은 다른 종류의 보존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비해서 공공성이 상당히 높은 재산이고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사인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에는 위탁수수료만 위탁받은 자에게 주고 당해 자치단체는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제정안 제27

조에 보면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공공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일반 사기업의 경영윤리라든지 경영방침이 도입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본적으로 행정재산이 공공성이 강한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너무 종류가 다른 것을 일반 기업의 법칙에 따라서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답변 안하시고 실무국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지방지원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성과를 올리면 성과를 올린 본인 당사자가 그 성과의 일부를 가져가도록 하는 시스템의 변화인데요.

○유기준 위원 일부 또는 전부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건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지금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주고 있는데 거기에 수익 부분을 추가로 줍니다. 여기에서 사용료를 올려 가지고 이익을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됩니다.

○유기준 위원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수탁자가 과도한 수입 향상을 위해서 사용료를 인상한다면 결국 이용자인 국민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공용재산에 청사나 도서관, 박물관, 도로, 하천, 문화재, 보존산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공공시설을 일반 사인에게 위탁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탁비만 수탁자에게 주고 나머지 사용료는 지자체가 도로 가져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일반적으로 위탁을 줄 때 순수하게 관리만 시키는 위탁이 있고 또 하나는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나 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주민에게 부담이 더 크게 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나 수수료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쪽에서 수익을 늘려

가느냐 하면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서 이용자를 늘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인센티브를 줄 만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순수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비만 주는 것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스템의 장점은, 전에는 돈을 받아 가지고 시에 내고 그것을 다시 시로부터 받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받은 것 중에 시에 낼 돈은 내고 자기가 갖는, 단순화되어서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점이 새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계해서 남은 부분만 시나 지자체에 주는 것과 증대된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자의 수입으로 하는 두 가지가 이 법의 주된 골자인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마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지나치게 채산성이나 기업성만 고려한 것이 아니냐,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아주 강한 것인데 여기에 기업의 계산방식만 도입하게 되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기업성을 추구하는 측면 중에서 요금 인상에 의한 방법은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뒷부분은 저절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효율을 높여서 이익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공공시설의 경우와 이 법안에서의 공공시설의 경우가 서로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 법을 단일화시켜서 2개를 같이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설치를 달리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 부분은요, 모든 공공재산의 관리는 바로 이 법,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직접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순수 행정재산에 대한 개념만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 위원 제39조(교환)를 보면 이번에 국유재산법보다 상당히 전향적으로 개정을 했는데 사유재산하고 교환하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예.

○**이재창 위원** 그런데 이 규정 중에서 첫째는 등가나, 등가 이상으로 할 것이냐, 공공목적이면 등가가 아닐 경우도 교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둘째는 2항에 “교환하는 잡종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1항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잡종재산 중에 어떤 재산을 교환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가격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호 같은 것은 전향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국유재산법에는 절대 없습니다. 공공목적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교환하지 못하도록 해서 참 전향적으로 규정했는데, 다만 본 위원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영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에 의하면 아주 자세하게, 이를 떼면 “가액의 차이가 4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창 위원** 교환을 할 경우에 어떤 절차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해도 좋지만 2항은 1항을 제한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제한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야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갖어요? 잡종재산 중에도 어떤 것은 안 된다, 교환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잡종재산의 어떤 것은 교환할 수 없다는 것이 법에 나와야지 그것이 대통령령에 나온다면 1항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법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국유재산법도……

○**이재창 위원** 아마 법으로 규정해야 될 겁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국유재산법도 영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

겠습니다.

○**양형일 위원** 교환에서 과거에는 어떤 가격 제한이 있었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예.

○**양형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철폐된 겁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예, 일단 가격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현찰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환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양형일 위원** 과거에 4분의 3 조건을 두었던 근본적 이유가 있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예.

○**양형일 위원** 그것은 교환을 구실로 해서 사실상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

○**양형일 위원** 교환을 구실로 해서 사실상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액의 차이가 4분의 3”이라는 제한을 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이를테면 어떤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그마한 땅을 큰 땅하고 교환하게 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해 보면, 과거에는 관에서 하는 평가 자체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개선되어 가지고 거의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형일 위원** ‘시가’라고 하셨는데 시가보다는 ‘감정평가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저희가 감정평가액으로 하니까, 비근한 예로 최근에 어느 구청에서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땅을 팔았는데 4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가해 보니까 시가가 1000억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400억으로 산정할 때 특별하게 잘못된 것이 없고 감정평가사 두 사람에게 평가 의뢰를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간과되었던 점이 재개발지역이었음에도 재개발이 되

있을 경우의 개발이익 부분이 가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시에서 시가 부분을 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것이 최저한도의 기준이 되도록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형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가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해서 반영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양형일 위원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예.

○양형일 위원 잡종재산의 대부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이고 그 외의 것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양형일 위원 1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는 것 같은데, 2년으로 해 가지고…… 토지하고 그 정착물은 5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범위가 1년으로 제한되면…… 대부대상이 되는 재산에 따라서 2년을 주어도 사실상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예, 그 경우에 갱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갱신에 의해서 해결될 수도 있는데……

○양형일 위원 갱신이 가능하면 6개월로 하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양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다음 누구세요?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4건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법 제58조에 의해 가지고 공청회를 생략하고 해 보려고 했더니 서병수 위원 말씀을 들으니깐 나중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일단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거기에서 공청회 문제를 상의해 가지고 법을 개정하려면 공청회를 꼭 개최해야 되겠고, 만약 안 해도 되겠다고 하면 폐기하고 말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볍게 봤더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4개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 請願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1. 새마을금고法中改正法律案(채수찬 의원 대표발의)(채수찬·김성곤·김영춘·김종률·김희선·문학진·박명광·박병석·박재완·안상수·엄호성·오제세·우제창·유승민·윤건영·윤호중·이계경·이근식·이상경·이상락·이승희·이원영·이종구·정덕구·정성호·지병문·신학용 의원 발의)

12. 새마을금고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25분)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원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청원법 개정안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원법개정법률안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법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청원서 제출절차를 간소화하며, 벌금액을 조정하는 등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을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감사·수사·재판 등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며, 종전에 동·이장이 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청원서에 첨부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청원서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벌칙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벌금 액수를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를 건설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업무통제시스템을 강화하며,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금고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전문경영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지역금고에 1인 이상의 임원 상근을 의무화하고, 금고이사장의 연임 횟수를 종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며, 둘째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고 감사에게 상법상의 유지청구권을 부여하고, 금고연합회에는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제를 도입하는 한편, 셋째 영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금고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 법인 출자를 허용하도록 하며, 넷째 경영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금고와 연합회가 준수해야 할 경영건전성 기준을 법제화하고, 연합회의 결산·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개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청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전문개정안으로서 청원 불수리 사유를 구체화하고 청원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시키며 벌금액을 현실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 개정의 연혁 및 의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청원법은 1961년 8월에 제정된 후에 1963년 2월에 전문개정을 통하여 이중청원 금지, 다수인이 청원을 할 경우 대표자 선임 규정 등을 신설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법안입니다.

한편 청원과 같은 의미로 불 수는 없지만 간접

적으로 청원권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를 살펴보면, 1994년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2001년에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고충처리,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과 요구를 청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청원제도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민의 다양한 국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바, 이번 개정안은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여 국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고 청원 제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청원대상기관의 용어 및 범위 명확화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6쪽의 청원심사규정 신설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에서는 청원 수리기관이 성실하게 심사할 의무와 청원심사·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현행 규정의 신속히 심사 처리해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는 것과 청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각 지방의회의 경우 청원처리심사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관련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26조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헌법 제89조제15호는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실효성을 고려해 볼 때 청원을 수리한 각 국가기관에서는 해당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원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소속기관의 규칙 등으로 제정하도록 이 법에서 위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과 채수찬 의원 대표발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새마을금고법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금고에 상근임원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금고이사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며,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및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규정하는 한편 연합회의 경우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관련 사항입니다.

새마을금고에 상근임원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서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금고에 상근임원을 의무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지역금고의 경우 임원 중 1인 이상을 상근으로 하되 3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사장이 비상근인 경우에는 반드시 상근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가 증대되고 있고 경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경영인의 도입이 요구되며,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농협·수협 및 신협에서도 상근임원 내지 상임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상근임원제를 둘 경우에 비용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이사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유사한 법률인 농협법이나 수협·신협에서도 연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입법례로 봅니다.

다음 새마을금고의 문화복지후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에 투자한도 상향조정 및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문화복지후생사업, 교육사업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타 법인에 대

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문화복지후생사업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금고가 출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다시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로 금고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 감사의 직무에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신설하여 출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는 조합의 내부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시행령에서 정하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금고의 대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한도의 초과대출 시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또 다시 대통령령에서 최고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규제일 뿐만 아니라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제8조에서 “회원은 출자와 수에 관계 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어서 미성년자나 선거일 직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과열 및 혼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면서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협 및 신협 등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의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수찬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수찬 의원 대표발의안의 개정 내용은 금고와 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해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채수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증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본 건은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험업법의 적용배제조항 삭제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은 금고와 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금고나 연합회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아니며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수찬 의원안에서는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여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협·수협·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도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은 그동안 건실하게 운영됨으로써 가입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를 야기시킨 바 없으며 농협법 및 수협법에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주무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및 수협과 유사한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에 공제사업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공제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용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법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김충환 위원** 현행법 제5조에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불수리 사항

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이런 것을 전부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행정심판 같은 경우 감사·수사에 청원을 못 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감사·수사·조정은 사실상의 불복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사무 처리규정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똑같이 여기에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현재법보다 강화되어서 한 내용은 사실상……

○**김충환 위원** 결국 청원은 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에서 감사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다시 청원을 진행하는 것은 이중적인 절차이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지금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을 내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하나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지요.

○**김충환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일반 국민들이 어느 기관에 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행자부에도 내고 자치단체에도 내고 또 청와대에도 내고 검찰에도 내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못 내도록 하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7조제2항(청원서 제출)에 되어 있거든요. 제7조제1항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신청할 수 있고 그것은 처리하는 기관에 다 이송이 되어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제10조를 보면 청원내용 속에 상

대방을 모해하는 것이 들어 있을 경우에, 그런데 그것이 모해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표현상에 상대방에 대한 모해 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데 벌칙규정을 보면 제10조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해 놓으면 청원을 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이것이 형법상의 무고죄가 있지 않습니까? 무고죄하고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무고이기 때문에 자기의 청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무고와 똑같은 수준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양형의 형평성 면에서 맞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김충환 위원** 하여튼 저는 이것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용희 위원장, 최규식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현재 규정상 타인 모해 청원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다 보니까 벌금규정 자체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이 넘게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김충환 위원** 금액만 바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지금 대략 청원을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고 글을 쓰다 보면 자기주장을 쓰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모해 사항이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럴 경우에 심사기관이 조사를 해서 아닌 경우는 아닌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보내 버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청원을 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그러니까 타인을 모해한 청원임이 확실한 경우에 현재 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전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벌금만 바꾼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인을 모해하는 청원임이 확실한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무지한 탓으로 한 경우라면 그런 식의 강력한 적용은 안 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나중에 법을 심사할 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春 委員** 위원장님, 바로 이것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식** 김기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洪春 委員** 지금 장관께서도 그리고 정책홍보관리본부장께서…… 형법 제156조에 무고죄를 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무고라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즉 징역을 보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무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청원이라는 것은 토지보상이 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억울한 경제적 사정 이런 것 가지고도 청원하는 것이예요. 청원법의 청원은 일반적으로 타인을 징역 보내 달라는 청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형법의 무고죄하고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법을 만들 때 10년 이하라는 것이 있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법조인은 다 느낄 것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 아니고 집이 억울하게 헐렸다, 왜 우리집이 수용이 되었느냐, 보상이 잘못되었다 이런 모든 개인생활에 있어서 국가공권력이나 이런 데 의해서 억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무식한 소치로 허위사실도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징역 10년이라고 해 놓으면 겁이 나서 어떻게 감히 청원을 하겠는가 그래서 무고죄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식**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우선 처벌규정에 공무원 제13조(벌칙)도 너무 과중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종전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 원으로 50배나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아까 김기춘 위원이 말씀하신 맥락하고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13조(벌칙) “공무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차별대우를 했을 경우의 처벌조항인데 종전에는 제3조가 없었어요. 청원대상기관이라는 것을 규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는 청원대상기관을 정하면서 제3조에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처벌도 공무원이라는 특별신분 때문에 과중한 것이 아니고 차별을 금지시키는 데 대한 처벌이라면 대상도 공무원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청원대상기관에 속한 이것을 전부 해서 제3조에 규정한 ‘청원대상기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만약 협소해서 한다면 제3조 제3호에 의해서 ‘청원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때요? 누구 아는 분 답변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창 위원** 큰 차이가 아니라 대상이 달라져요, 처벌을 받는 주체가 달라져요. 지금은 공무원만 하게 되어 있는데, 청원을 받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법인·단체·개인까지 넓혀 놓고 처벌은 공무원이 할 때만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처벌을 공무원 때문에 한다면 얘기할 여지가 없지만 누구든지 청원을 받는데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를 살린다면 3조3호……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청원의 대상기관에 계상기관이 다 해당되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고요. 궁극적으로 청원의 처리를 대부분 공무원들이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재창 위원** 아니, 위탁을 해서 실제로 처리하는 사람한테도 해야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양형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김기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양형의 징역기간과 금액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시정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정부 내에서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양형을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金洪春 委員** 이 법이 1961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양형이 형평에 너무나 안 맞으면 그것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겸하여 조금 전에 이재창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차별대우의 금지” 이 조항에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강요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벌칙에 보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던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치 차별을 당하지 아니한 자, 그런데 차별을 당한 자로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처벌법규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2조는 “위반한 자” 청원에서 모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모해한 자’라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11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령 ‘청원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원을 받은 자는 청원했다는 이유로 청원자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행위주체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 행위주체가 나온 다음에 ‘그런 행동에 위반되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가다듬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맞습니다.

○**金洪春 委員**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에요. 징역 5년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차별대우냐? 청원했다고 한 번 부를 것을 열 번 부르면 차별대우냐, 그 사람에게 ‘너 왜 청원했느냐’고 고함지르면 차별대우냐? 형사처벌 법규의 명료성이 대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차별대우’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라 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판사나 검사나 경찰관이 ‘그것은 차별대우한 거다’ 하면 차별대우가 되느냐? 그다음에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뭐가 불이익이냐는 말이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사람 청원했으니까 앞으로 은행 대출해 주지 마라’ 이게 불이익 강요냐? 그래서 ‘차별대우’와 ‘불이

익을 강요'라는 이 용어는 형벌법규로서는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하고 여기에 잘못 걸리면 이현령비현령으로 걸린 사람에게 따라서 징역 5년을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법무부·검찰 쪽에서도 아마 깊이 생각을 안 한 모양인데 법제관한테도 물어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잘 가다듬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성래 위원 어차피 지금 말이 난 김에 저도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합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 이런 식의 단체가 있고 또 개인도 있습니다. 단체와 개인이 다 처벌받는다라는 양벌규정인지, 개인만 처벌해야 되는 규정인지 이것도 지금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특히 11조(차별대우 등의 금지) 이 부분은 법령상의 용어로서는, 도저히 처벌규정으로서는 있을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현령비현령 아니면 너무 포괄적인 개념 규정이기 때문에 손질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알겠습니다.

○조성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전문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내용으로 보아서 공청회까지 열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견해가 어떠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역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관 위원님!

○서재관 위원 새마을금고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제출 개정안 26조의2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종전에는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이던 것을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

○서재관 위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높였어요. 1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는 것을 100분의 20까지 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높였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지방지원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2배로 상향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재관 위원 그것은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마을금고 사고 많이 나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예, 사고 나고 있습니다.

○서재관 위원 사고 많이 납니다. 옛날부터 사고 많이 나고, 요즘도 계속 사고 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인 대출한도를 늘리면 사고를 많이 늘리는 결과를 초래해 가지고 건전재정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서재관 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그런 거예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런데 다른 유사 금융기관과 비교해 보면……

○서재관 위원 새마을금고하고 다른 유사 금융기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사고 요인이 많은 금고가 새마을금고예요, 다른 것하고 달라요. 그 회원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데 대출한도를 늘려 가지고 '사고 많이 내라'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반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서 위원님, 심사해서 대출 적격자를 찾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상황이 가능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대출한도를 늘려 주면 오히려 운영상에 이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서재관 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은 사람한테 술한 돈 썼다 떼여 가지고 사고 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식 김기춘 위원님!

○金洪春 委員 지금 서재관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감인데요. 새마을금고라는 것이 일반 금융기관과 달라서 영세한 예금자들의

돈을 모아 가지고 운용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확대 및 대출한도 규정’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문화복지후생사업에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말하자면 후생사업에 돈을 많이 쓰도록 이렇게 열어 주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출한도가 100분의 10이던 것을 100분의 20으로 해서 동일인에게 대출을 많이 해 주고, 또 비상근임원을 상근임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월급도 많이 줘서 말하자면 재정의 건전성 보호에 역행하고 영세예금자 보호 취지에도 반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새마을금고들이 IMF 이후에 구조조정한다고 사람 전부 자르고 통폐합 한 것이 엇그제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후생복지에 돈 써라. 동일인 대출한도도 많이 줘라. 상근임원 두자’ 이러면 새마을금고가 건전해지겠느냐? 오히려 반대 아니냐?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고 영세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김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운영에 있어 자금의 건전성은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자금 운용 측면에서 자율성까지는 아니지만 신축성을 줌으로써 그것을 증식시켜 주고, 그 결과 새마을금고 전체 자산을, 파이를 키워 주고 그것이 이득으로 가는 그런 쪽도 해 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제한적으로 규정, 위험하니까 자꾸 통제를 하고 제한을 하고 기준을 만들고 하다 보면 융통성이 없어지고 사실은 자금 운용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金洪春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새마을금고법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수석전문위원한테 제가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의결권 및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셨거든요.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회원은 출자와 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당해 금고의 회원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월 미만인 회원에 한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내용은 알겠는데, 농협하고 신탁하고 새마을금고는 상법상 아니면 민법상 서로 취급되는 게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아마 주식회사 아니면 유한회사 정도로 운영이 될 것 같고, 제가 자세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농협과 신탁 같은 경우는 민법상 조합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래는 농협·신탁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상법상 회사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익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에게 오픈하는 게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농협이나 신탁의 조항을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선거권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선거 하루 전에 회원자격을 얻어 가지고, 선거가 과열되는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농협이나 신탁처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선거권을 줘야만 선거로 인한 과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유기준 위원** 하여튼 법적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특수법인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이나 수협의 경우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규식** 다음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 위원**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근 이사제를 도입하는 문제인데,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의무조항으로 한다면 법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구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라는 것이 자체 조합 형태로 운영되게 되는 구조인데 근래에 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금고화가 되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전문성도 필요로 하다 보니까 막대한 인건비가 소요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인데, 과연 새마을금고

를 제2금융권으로 육성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까지나 주민 자체적인 서민금융체제로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데 지금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근 임원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한 금고에 상근 이사를 두게 되면 1년에 한 4500여만 원이 나가야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226억 원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통계인데,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금고에 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그간에 새마을금고를 운영하면서 부실한 요인을 안고 있는 데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전문 상근 임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데만 의무적으로 두는 것으로 할 것이지 획일적으로 전부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둘째로는 상근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적어도 법에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사장이라든지 또는 그 외의 원인에 의해서 마치 취직 처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연봉이 4500만 원 정도 되면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리려면 자격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상근 임원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특히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운영상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에서 정하면 원칙 이런 것은 될 수 있지만 구체적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상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창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금액은 얼마에서 얼마까지라고 하는 하한과 상한 정도를 규정하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상근 임원을 두는 대상을 어떤 것으로 한다고만 하고 자세한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적어도 상근 임원을 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두어야 될 데만 둔다는 것이 법에 반영되어야지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으면 허실한 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최규식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희도 새마을금고에 임원을 두고 비용이 나가는 부분을 확대하고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정신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할 텐데 모든 것을 법률에 다 명시해서 제한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아니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상근 임원을 많이 두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음 홍미영 위원님!

○**홍미영 위원** 새마을금고하고 새마을운동본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것은 틀립니다.

○**홍미영 위원** 물론 사업내용은 틀린데 제가 예전에 새마을운동본부에 연계되는 조직으로 그려진 도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미영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한다면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와 신탁이 마찬가지로의 뜻을 가지고 출범했는데 한쪽은 행자부에 속해 있고 한쪽은 다른 부서에 속해 있어서 그런데 이 법안을 내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하거나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희들이 신탁이나 다른 협동조합과 관련된 기능들과 제도를 같이 검토했고, 근본취지가 같기 때문에 같은 선에서 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신탁이나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서 새마을금고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더 높고 또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예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낫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홍미영 위원** 건전성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그동안의 사태들이 그렇게 안심할 정도는 아니고, 신탁의 경우 나름대로 문제는 있지만 지역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혹시 그러한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고, 그 필요성을 적

절한 시점에서 다시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이사를 현행대로 “11인 이상 19인 이하”로 했는데 감사 3인을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두게 되고 감사위원이 이사에 들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금고가 규모가 크고 하다면 신탁중앙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사 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개정안에서 “11인 이상 19인 이하”로 한 것은 미처 점검하지 못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희들은 그 정도면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다른 데와 비교해서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홍미영 위원** 이전에는 감사 3인이 이사에 안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감사가 폐지되고 이사 3인으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어느 수준이 적정 규모인가 하는 것은, 다른 데의 경우 이십몇 인까지 되어 있던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미영 위원** 하여튼 새마을금고하고 신탁, 새마을운동본부의 관계는 이후의 숙제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홍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양형일 위원님!

○**양형일 위원** 간단히 제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첩적입니다. 단지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새마을금고의 상근 임원제를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해서 권고하는 방안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두도록, 강제적 의무조항으로 해 놓으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점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감사기능과 감독기능을 강화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또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성이 민사상·형사상 열려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현재 임의규정으로 해 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혹시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와서 잠깐 인사나 한마디하십시오.

○**金洪春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희** 예, 말씀하십시오.

○**金洪春 委員** 특별히 우리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지 아니했으면 이해당사자가 이 자리에서 진술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할 얘기가 있으면……

○**위원장 이용희** 진술이 아니라 인사만 하고 돌아가라는 얘기에요.

○**金洪春 委員** 알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관리본부장 박동귀** 새마을금고연합회 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동귀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법안 역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賞勳法中改正法律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박찬숙·안택수·심재철·윤건영·이군현·정종복·유승민·이인기·김영숙·노웅래·노현송·이상득·심재덕·박세환·김영선·김재원·엄호성·김기현·정병국·황우여·서재관·이경재 의원 발의)

14.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최규식·강창일·장복심·서재관·양형일·민병두·김태홍·김희선·박기춘·홍미영·지병문·조성래·노현송·윤원호·권선택 의원 발의)

15.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

(노현송·배일도·이상경·박기춘·정성호·우제항·김태년·신기남·양형일·유인태·최재천·김태홍·안상수·조경태·고진화·서재관·최성·엄호성·노웅래·고조흥·황우여·홍미영·강기정 의원 발의)

(17시16분)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제15항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행자위원회에서 같이 도움을 주셨던 존경하는 박찬숙 의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제안설명을 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찬숙 의원** 감사합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과 여러 행자위원님들을 다시 찾아뵙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

각합니다.

상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4년 8월 26일 본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것인데,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현행 상훈법상의 서훈 추천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서훈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법의 서훈 치탈 사유 규정을 보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라고만 적시되어 있는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조문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형법·군형법·국가보안법 등의 반란 또는 이적행위 관련 조항을 적시하는 등 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서훈과정이 불투명해 정권 말기에는 선심성 또는 나눠 먹기식 양상마저 나타나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서훈이 확정되거나 치탈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인적사항과 그 사유를 원칙적으로 관보에 공개함으로써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서훈의 영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상 말씀드린 이 법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문화관광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제 질의 순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떠서 질의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박찬숙 의원님 편한 대로 하세요. 오시면 더 좋겠고 바빠서 못 오셔도 할 수 없고……

○박찬숙 의원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꼭 오세요.

○박찬숙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최규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최규식 의원 최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훈을 받은 자가 그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또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서훈을 받은 이후 한승조 씨처럼 일본 잡지에 ‘일본 식민지배는 오히려 축복해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여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고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거나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의 서훈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서훈을 주는 것은 그 이전 행위에 대한 공을 기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을 줄 때도 지금까지 잘했다고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에 한승조 씨와 같은 경우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국위손상 및 국가이익 위배행위를 한 자”의 경우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위손상 및 국가이익 위배행위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판단의 준거로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의 서훈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청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권이 자신과 입장이 다르다고 자의적으로 법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모호하게 되어 있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에 규정된 ‘내란·외환의 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에는 부적당한 관계법령의 종류를 법에서 직접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민족정기를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현행 서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희 최규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송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노현송 의원입니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치탈하는 절차조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탈에 관한 절차조항은 서훈의 추천조항을 원용하여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국무회의 상정에 대한 심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치탈 사유 발생에 따른 국무회의 상정의 주체와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치탈규정 자체가 치탈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과 불명예스러운 처분이기에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명시하여 충분한 검토를 요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치탈의 절차조항인 국무회의 심의규정을 좀더 명확히 하여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서훈을 관리·감독하는 주체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국무회의에 회부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서훈의 추천조항과의 형평상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국무회의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노현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찬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상훈법중개정법률

안, 최규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현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상훈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서훈의 원칙과 절차 등 서훈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개정안은 국가서훈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여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토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취소사유와 취소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훈 취소 사유 구체화 및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8조제1항에서는 서훈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친일반민족 행위자나 국위손상 및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과 같이 서훈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의 명확성 및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서훈 취소 사유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위 손상이나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청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서훈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각각 신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결정은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인 특별조치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유사 입법례인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제7조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치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위손상 및 국가이익 위배 행위자의 서훈 취소 규정은 국위손상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훈 취소 요청 주체 명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현송 의원 대표발의안은 서훈 취소 사유 발

생 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국무회의에 회부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서훈의 주무부처로서 치탈절차 이행을 위한 국무회의 회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문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서훈 취소 사유 발생 시 서훈 취소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명시하는 것은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서훈 취소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서훈 추천은 각 부처의 의뢰를 전제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천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훈 추천권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안은 서훈을 추천할 수 있는 현행의 추천권자 외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서훈추천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훈 후보자는 전국적인 범위를 망라하여 발굴하고 있고, 다만 동일분야의 포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훈 추천은 ‘기관’ 단위가 아닌 ‘업무기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기능에 따라 포상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서훈추천권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후보자를 발굴할 수 있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서훈 요구로 인한 포상 남발과 영예성 훼손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용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개 항에 대해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기 위원** 현재는 상훈법 제8조에 의해서 서훈을 취소할 경우에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1. 서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로 외국도—미국도—이 기준을 따르는 것 같고,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3,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가 현재 우리의 치탈 사유입니다. 공적이 허위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법상의 죄, 특히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했거나 중형인 경우와 실형을 받은 경우에 예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공이 갑니다.

그런데 최규식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안의 내용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법들은 형사 확정판결 정도만 했는데 “국위손상 및 국가이익위배행위를 한 자로서” 이렇게 하면 너무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미국의 경우에도 오히려 군인에 대해서만 허위공적일 때 취소하고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소규정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서훈 취소 사례도 10건 정도밖에 안 되고 예외적으로 5·18광주민중화운동특별법의 경우에는 광주민중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 해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뜻은 좋습니다마는 치탈의 사유에 너무 주관적인 개입과 재량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식 의원**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념적으로만 본다면 무엇이 국위손상이고,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목도한 것처럼 한승조 씨의 경우에 일본 잡지에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는 우리 민족 으로서는 축복할 만한 일이었다’는 글을 게재했는데 우리 국민이 그 당시 공분한 것처럼 어느 누가 생각해도 국위손상이고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 당시 허위로 드러났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취소하는 것을 신중하게 만들어 놓은 법 조항을 그대로 꼭 지켜야 하는지 국민적으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바로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고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문절차가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당연히 취소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취소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위원님께서서는 미국의 경우에 군인 외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예를 드셨는데 영국에는 국가에 대한 신의상실 행위가 있고, 캐나다에는 공익의 해가 되는 행위가 있고, 이탈리아에는 도덕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 훈장을 받고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훈장을 받은 것에 비해서 취소한 것은 10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아주 신중하게 취소된 예로 드셨는데 오히려 상훈법을 개정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우리 사회가 취소하지 않았습시다. 역사 정리를 안하고 계속 왔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건이 신중히 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5·18특별법에 의해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사람도 취소되지 않았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서 또는 3년 이상 형을 받았는데도 취소되지 않았습시다. 지금 훈장을 받은 5공 인사들도 전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또 국민의 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한 개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 위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서훈 치탈제도를 보더라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최규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 대한 신의 상실, 도덕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라고 규정했더라도 자료에 보면 그렇게 취소한 선례가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재량성이 넘치는 자의적인 규정을 두면 치탈제도의 본래 뜻을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남용 내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역사의 정리’, ‘과거사’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역사의 정리와 과거사도 중요하다는 현재사를 잘 이끌어 가고 현재 우리 국민들을 잘 이끌어 가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강창일 위원님!

○강창일 위원 잘 아시다시피 김창룡은 일제시대 때의 유명한 악질 친일분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립묘지에 있는 아주 희한한 역사가 계속되어 왔지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에 어느 시기에는 독립운동에 나섰다가 그 이후에 반민족행위를 해 가지고 지탄받는 자들이 서훈받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시다. 그래서 아마 반민족행위특별법에서 진상이 밝혀지면 이런 식의 법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과거사법을 만든 근본정신과 취지 속에는 잘못된 역사 속에서 해방 이후 법의 잘못된 집행, 악용, 사건의 조작·날조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진상조사가 될 텐데 만일에 ‘그것은 법이 잘못 적용된 것이고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분들이 서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마련됩니까? 최 의원이 대답해 주시지요.

○최규식 의원 공적이 밝혀져서 서훈을 주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창일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에 혁혁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 그런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것은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에 최 의원이 낸 개정법률안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서훈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최규식 의원 저는 서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국위 손상이나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청문이나 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치탈하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김기춘 위원님!

○金洪春 委員 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숙 의원안에서 지방분권시대니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 서훈을 추천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상당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마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입법·사법·행정부 각 3부의 서훈을 줄 대상을 총무처에서 일괄해서 추천했습니다. 그것은 상훈과 공적의 정도를 어느 정도 비교·교량해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구는 1등을 주고 3등을 주고, 무궁화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했고 최종적으로는 총무처에서,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도지사·광

역시장은 일반적인 행정관청인데 사법부의 지방관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고등법원장 하면 경남 양산·부산을 관할하는 사법부의 광역기관장입니다. 그런데 판사나 법원 직원들에 대해서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은 추천권이 없고 도지사는 자기 행정 공무원밖에 못 합니다. 삼권분립에 비추어 볼 때 도지사가 판사를 상신할 수는 없단 말이지요. 그렇게 볼 때 도지사를 넣는다면 고등검사장, 고등법원장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법부로부터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균형 있는 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추천권을 통일한 것은 종전에도 깊이 생각해 놓은 결과로 법원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하면 법원행정처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제8조제1항제3호의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를 삭제하는데 삭제는 적절치 않다, 위의 제2호에 구체적으로 국가안전에 관한 죄명을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왜 이것을 삭제하면 안 되느냐 하면 그 시대의 국민 감정과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가령 뇌물 부정을 방지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 뇌물죄로 수역을 받아먹고 5년 이상 10년의 징역을 받았다면 이것은 국가안전에 관한 죄는 아니지만 훈장을 주기가 곤란하다 이거지요. 또 가정과괴범, 강간죄, 마약밀수를 했든지 마약죄가 있단 말이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시대에 봐서 정하자고 융통성을 둔 것인데 이것을 싹 없애 버리고 위에 몇 개만 구체화하면 잘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규식 의원님 안의 제8조제1항제5호 “그 밖에 국위손상 및 국가이익위배 행위를 한 자로서 서훈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대해 이인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제4호에 있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처럼 그 법에 조항을 하나 넣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친일부역자로 판명된 자가 훈장받은 것이 있으면 삭탈한다고 넣는 것이 적당하고, 일반법인 서훈법에 이런 것을 일일이 넣어서 하면 일반법으로서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넘기는 것이 좋겠고, “그 밖의

국위손상”은 국민감정에 비추어서 마땅히 그리 해야 되고, 저도 어느 교수가 그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근 5000만이 살다 보니 별의별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일본의 경우만 해도 안중근 의사비를 모시고 유품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애국의사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이익에 반하거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동이나 언동을 한 것은 국민이 전체적으로 여론에서 비판할 일이지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단 말이지요. 그래서 모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도, 대단히 잘못됐지만, 그 이유로 징역 보낼 수는 없단 말이지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훈장을 준 분에 대해서 일일이 박탈하기 시작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탄압이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한다’고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매우 해치게 된다는 점도 유념해서 이 법을 손질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의 나치 형법에서는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자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사회에서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듯이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전 국무위원과 공적이 있다고 결정해서 훈장을 주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형을 받거나 객관적으로 아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도덕한 행위 내지 반국민정서적 언동을 가지고 일일이 훈장을 취소하기 시작하면 잘되면 좋은데 잘못 남용되면 해악이 되지 않겠느냐는 점을 유념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식 의원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님이 제 발의안에 대해서 지적한 두 가지 사항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부분은 법 체계상 지적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봤습니다마는 그 법에 관련 조항이 들어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위 손상과 국가이익 위배행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발언을 하거나 국위를 손상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고 서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다른 특별법들에 의해 훈장을 치탈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아닌 이런 경우에는 국민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이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洪春 委員** 그 취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뜻에서 살인범도 1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변연히 살인범임을 알아도 잡아넣을 수 없듯이 어떤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기 전에는 여러 가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점도 충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김충환 위원님!

○**김충환 위원** 저는 주장보다도 오늘 최규식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교 중에 난교호렌게교라고 일본에서 들어온 불교가 있습니다. 그 일본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일본 종교에 있다 보면 일본에 대해 숭배하는 의식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표현상에,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실정법적으로 훈장을 치탈하는 조건을 말 한마디까지 다 걸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이 문화적·사상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유정복 위원님!

○**유정복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님께서 서훈 추천권과 관련해서 시·도지사에게만 주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나고 지방에 있는 다른 관서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에 있는 많은 국가관서는 국가기관의 지방관서, 즉 보조기관의 성격을 갖는 비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시·도 또는 시·군·구는 바로 독립된 행정기관입니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그런 기관이고, 예를 들어서 고등검찰청이든 지방경찰청은 독립된 법인격이 아니라 중앙관서의 하나의 보조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나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중앙관서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운영되는 시·도의 경우는 당연히 서훈추천권을 갖는 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행의 체계에서는 추천권에 대한 올바른 개선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저는 이번에 최규식 의원님께서 서훈 치탈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그러니까 친일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를 서훈 치탈 사유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가의 행위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가 어떤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훈을 줄 때와 나중에 그 상훈을 다시 빼앗을 경우에 그 논리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국가 행위에 있어서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특별법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을 치탈한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그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허위임이 밝혀졌다는지 아니면 동일한 행위가 국가유공자로서 한 행위가 아니고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을 학살했다는지 이런 평가 때문에 동일한 행위를 달리 보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원래 친일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상훈을 받았고 그 이후에 친일행위가 있었던 것을 위원회에서 다시 평가한 그런 시간적 순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훈을 줄 때, 물론 이러한 친일행위가 밝혀지지 않는 않았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얼마든지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가 그런 상훈을 수여하는 행위를 했을 텐데 국가가 조사를 등한시했다가 한참 뒤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받은 상훈을 박탈한다고 그러면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역사에서 본다면 개인이 젊었을 때는 잘못도 좀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많이 반성하고 국가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개인의 역사적 발전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친일법을 만들 때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이 역사의 진실한 규명과 화해를 위한 것이라고 해서 친일법과 과거사법을 만들었는데 이 친일법에 의해 친일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불이익을 가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과거사법이나 친일법

을 만들었던 그 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이전에 이루어진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 또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위헌의 소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런 법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창일 위원 잠깐만요, 지금 유기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국가 절대주의적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마디 좀, 답변이 아니고 느낌을 얘기하겠습니다.

국가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절대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지금 친일문제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독립운동을 한 것을 가지고 서훈을 주었는데 그때는 어떤 행동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가 일단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년, 20년 지나서 자료도 나오고 해서 이 사람이 일제 앞잡이였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취소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잠깐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이인기 위원 우리가 친일진상규명법을 만들 때, 과거사진상규명법을 만들 때 입법에 참여했습니다. 마는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고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그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뭘 드러내 가지고,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치탈을 하고 상훈을 찬탈하게 되면 결국 개인에게 과거사와 친일 진상 규명 외에 플러스 피해와 해를 끼치게 되니까 그런 것은 이 법의 취지와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강창일 위원 아니, 독립운동을 해 가지고 상훈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반민족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그런 논리하고는 틀린 얘기 같아요. 독립운동 때문에 상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동일인이 친일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인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한 부분도 50%가 있고, 또 친일한 부분도 한 30% 있다면 그게 섞여 있는 행위이고 만약 독립

운동한 자체가 허위인 것 같으면 허위사실로 해 가지고 공적을 치탈하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까지 치탈하는 것은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강창일 위원 그것은 전혀 틀린 논리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앞으로 더 논의하시자고요.

○최규식 의원 회의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이지 피한 게 아닙니다.

우선 친일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이 법과 관련한 김기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이미 답변을 했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왕 발언을 하는 김에, 5·18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치탈을 했느냐 하면 유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5·18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훈·훈장을 치탈하도록 한 규정이 뭐냐 하면 진압한 것만 가지고 훈장을 받은 것, 그다음에 78년에 충정작전이라고 해 가지고 진압한 것만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치탈한다고 한 겁니다. 평가가 달라지고, 시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미영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다가 확인을 좀더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최규식 의원님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유사 입법례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참고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5·18 중에서 시민군을 진압한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이 총 91명인데 실제로 서훈이 박탈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됐다는 점에서 지금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또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규식 의원님이 5·18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행자부장관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은 현재 국무회의에서 절차상 논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제가 여기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홍미영 위원 그래서 노현송 의원님이 이번에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치탈되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 치탈되어야 될—91명 중에서 2명밖에 안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서훈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자부 쪽의 의견은 절차상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상명하복의 군 조직

상 이들에게 훈장을 빼앗을 수 없다는 이런 답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런 답을 한 것은 아니고, 추천기관이 국방부였기 때문에 국방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국무회의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데 부처 간 협조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포상의 경우에 상훈을 했던 그 공적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치탈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서……

○**홍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제5공화국’이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허화평과 허삼수의 경우에 충무무공훈장을 받았고 그 내용이 전 시 및 비상사태 전투에 참가해서 무공을 세운 자로서 받은 거란 말이지요. 이것은 충분히 민주화 운동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치탈되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국민감정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국민감정은 당연히 치탈되어야 될 사람이 여전히…… 정부의 무성의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서훈이 치탈되는 과정을 못 밟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입법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노현송 의원님의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법에 하면 시행하겠습니다.

○**홍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고홍길 위원님!

○**고홍길 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는 발언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좋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군 서훈자들에 대해서 치탈을 하고 과거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치탈을 하고 다 좋은데, 우리가 입법을 하면서 이것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한번 훈장을 수여하면 그 국가의 권위가 계속 유지되어야 훈장의 존엄성이라든지 영예성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상황이 바뀔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이 조금씩 바뀔에 따라서 계속 치탈을 해대고 계속 조사하게 되면 사실상 훈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생깁니다.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라든지 또 훈장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그런 점도 한번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에 대해서는 깊은 조예가 없습니다마는 모든 특별법을 만들 때마다 이 법에 의해서 인정된 자는 전부 훈장을 치탈한다는 식으로 법을 지어 놓으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반드시 상훈법, 모법이 같이 개정되어야지 특별법 만들면서 거기에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법체계상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원들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서 법안을 심의하시고, 동시에 제가 정부당국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훈장이 남발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수요에 의해서 훈장이 남발되는 경우는 없다가, 이 점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장관을 하면 무조건 청조근조훈장을 준다든지, 또는 ‘교육의 날’에는 무조건 교육훈장 주고, 정년 몇 년 마치고 난 사람은 무조건 국민훈장 동백장이다 뭐다 이런 것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훈장은 사실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거나 하는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국가의 훈장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행사부에서 앞으로 훈격을 심사할 때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국민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입법을 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점만 발언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고홍길 위원님, 아주 지당한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누구 말씀하실 분 있어요?

○**유정복 위원** 제가 최규식 의원님께 질의 좀…… 서훈 취소 사유를 여러 가지 나열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최규식 의원** 나열한 것은 아니지요.

○**유정복 위원** 서훈 취소 사유를 개정안에……

○**최규식 의원** 나열한 것이 아니고……

○**유정복 위원** 개정안에 취소 사유를 즉 적시하셨는데 예를 들면 형법이나 관세법, 조세처벌법 이런 것에 의해서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 서훈을 받은 이후에 이런 법이 확정된 경우를 얘기합니까? 서훈받기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됩니까?

○**최규식 의원** 우선 지금 유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래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서훈받은 후에……

○**유정복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규식 의원** 제가 나열한 조항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법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정복 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최규식 의원**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법에도 되어 있고 제가 한 것은 가령……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첨가한 겁니다.

○**유정복 위원** 글썄, 첨가한 그……

○**최규식 의원** 지금 물어보신 부분은 원래부터 있던 법이기 때문에……

○**유정복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것은 어떻든지간에 관계없는데……

○**최규식 의원** 저한테 해석을 구하신다면 훈장을 받은 이후에 가령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또는 일반 범죄라도 징역 3년 이상 등 몇 가지 죄를 정해 놓은…… 그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유정복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규식 의원** 제가 개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셔야지 원래 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한테 질의하실 것은 아니지요.

○**유정복 위원** 질의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지요.

○**최규식 의원** 원래 법에 있는 것의 해석에 관한 것을 저한테……

○**유정복 위원** 최규식 의원님의 의견이 어떠한에 따라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니까요.

○**최규식 의원** 그것은 제가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정복 위원**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제가 뭘 물을지 알고……

○**최규식 의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법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저한테 물으시면……

○**유정복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서훈을 받은 이후에 어떤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해석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유정복 위원**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서훈·상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적조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적을 인정받아서 서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논란의 핵심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것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서훈을 받은 공적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취소되는 것인데, 서훈 자체가 마치 그 개인의 모든 인격체에 대한 평가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서훈을 받기 전에 형법상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친일 반민족행위보다도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국가에 어마어마한 공적을 세워 가지고 서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받을 수가 없지요. 친일반민족행위보다 훨씬 더 나쁜 행위를 했는데……

서훈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어떤 공적에 대해 서훈을 주는 것이지 그 인격의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듯이 하면 상훈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하고 상훈법의 취지를 살려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아주 좋은 말씀이고, 충분히 토론들 하시자고요.

이명규 위원님!

○**이명규 위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문제를 다루다가 오늘 하루 종일 상임위원회를 비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법안심사소위원이라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지적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최규식 의원님이 내신 안에 신설되는 항의 취소사유에 “국위손상 및 국가이익 위배행위를 한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적인 구성요건으로는 조금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는 경우인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의 친일행위까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는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뭔가 제동을 건다고 그럴까요? 무조건 친일반민

족행위자가 되는 것만 가지고 서훈을 치탈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얘기드린다면, 취소사유는 개인으로 봐서는 엄청난 불이익과 불명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에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잘 하셨습니다.

○조성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예, 말씀하세요.

○조성래 위원 저는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얘기를 삼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만 밝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다른 법으로 말하자면 구성요건적인 사실에 관해서 너무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 등급이라든지 행위자의 행위내용에 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다 가려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서훈을 받기 전에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특별법인 이 법에 의해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서훈을 취소할 사유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와 상치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아예 소급입법인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급입법에 의해서 서훈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훈을 받기 전의 사유로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상훈을 받고 난 뒤의 일을 가지고 취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과거의 사실, 과거의 행적으로 상훈을 박탈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고, 다음에 최규식 의원의 발의안이나 현행법이나 대체로 큰 차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적절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위손상 및 국가이익 위배행위를 한 자로서 서훈 취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막연하고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한다면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런 규정이 실효성을 담보해 내지 못할 염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 위원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법 제8조 치탈 규정은 현행법도 그렇고 ‘취소하며’, ‘취소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취소행위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하나의 ‘취소’ 아니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아래 문구를 봐도 “패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선언적 효력을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8조의 서훈 취소 사유는 아주 명백히 규정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개정안의 ‘취소하고’ 또 현행법의 ‘취소하며’ 이렇게 된 것에 상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규식 의원께서 낸 개정안의 사항 중에 3호는 모르지만 4호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도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누가 구체적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될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했고, 또 5호 역시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주 추상적인 내용을 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치탈 사유만은 명백한 내용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찬숙 의원의 시·도지사한테도 추천권을 주자는 것은, 상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원수의 통치행위 중의 한 내용인데 그것을 누가 추천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범위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현행 체계에서 보면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한데 그런 의미에서 시·도지사에게 상훈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런 모든 면도 법안소위에서 잘 참작해서 가지고, 또 전체회의에서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자고요.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 정도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 역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변재일·염동연·김재홍·이덕모·유승희·이해봉·류근찬·이종걸·김종률·권선택·김낙순·홍창선·한화갑·김효석·노영민·오제세·이시중·우제창 의원 발의)
17.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 발의)(김양수·송영길·김병호·이혜훈·김용갑·김희정·안홍준·박형준·이상배·엄호성·최경환·신국환·이성권·김애실·권경석·박계동 의원 발의)
18.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유정복 의원 대표 발의)(유정복·박세환·박재완·김재원·정문헌·서병수·허천·박계동·권경석·박찬숙·엄호성·이주호·이혜훈·이경재·김명주·최경환·남경필·권영세·김양수·최구식·원희룡·윤건영·박형준·김석준·임인배·김충환·이재용·심재철·김희정·서상기·박진·정병국·나경원·황우여 의원 발의)
19.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이재오 의원 대표 발의)(이재오·김재경·김재원·유정복·안상수·엄호성·이혜훈·김문수·이근현·박계동 의원 발의)
20.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노웅래·염동연·이상민·김영주·김태홍·김재경·이광철·이해봉·고홍길·오제세·김희선·신중식·김종률·강길부·우제창·이원영 의원 발의)
21.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대표 발의)(문학진·강혜숙·김태년·김태홍·김현미·김형주·김희선·노웅래·박명광·변재일·서갑원·서혜석·안민석·오영식·우원식·우제창·유기홍·유승희·이근식·이기우·이상경·장영달·조경태·조정식·최규성·최성·최재천·최철국·홍미영 의원 발의)
22.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16분)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내지 제21항 변재일 의원·김양수 의원·유정복 의원·이재오 의원·노웅래 의원·문학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

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김양수 의원·이재오 의원·노웅래 의원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유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유정복 의원 유정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 등 34인이 지난 3월 11일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또 현실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자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을 비롯해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총 27인에 국한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총리 임명 사태, 경제부총리의 재산 파문 등 일련의 사태를 고려할 때 적어도 그 역할과 지위의 중요성과 비중에 비추어 행정 각부·처의 장관까지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민주화·정보화·세계화의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인사청문 대상에 국무위원을 포함시키자는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도 여러 차례 개정 약속을 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대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민주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유정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에는 문학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입니다.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교정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교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무부 교정국을 법무부의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정행정 업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폭증하고 있고 과거에는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교정행정의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의 세계화 및 사회화 추세에 부응하여 교정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중한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정조직은 타 행정기관에 비해 너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일선 교정시설은 약 2.7배, 교정공무원은 약 3.3배, 그리고 수용인원은 약 2.5배가 증가하였으나 법무부 교정국의 조직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교정조직은 일선 교정시설에 대한 중간 감독기구로 4개의 지방교정청을 운영하고 있으나 본청이 없는 기형적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교정정책의 연구·기획 기능 부족과 교정공무원의 사기 저하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정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범죄자로 하여금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고 볼 때 재범률과 범죄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정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교정조직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통한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라는 교정정책의 근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정국을 법무부의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아무쪼록 교정 행정 및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동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문학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계의 개편을 통해 관련정책의 총괄·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수립·총괄·조정 및 평가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행자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7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협력 그 밖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을 ‘원자력의 진흥 및 규제’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그동안 정부가 원자력의 진흥 및 규제에 다소 소홀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사무는 원자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에서 원자력국을 설치하여 분장사무에 원자력의 이용·개발·진흥·안전·감독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도 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의 진흥 및 규제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번재일 의원안처럼 정부조직법에 원자력의 진흥 및 규제에 명시할 경우 이 분야에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원자력 분야는 진흥 및 규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용·개발·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는 현행처럼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과학기술부의 직제 개정을 통해 진흥 및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양수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관리본부를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유지의 총 면적이 전 국토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및 관리체계의 부실로 인해 국유재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고, 현재 재정경제부 내 국유재산과(현 소속인원 10명)로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국유재산관리본부(1급)로 조직을 강화·개편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제출(2005년 1월 17일)할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조직에 1급 본부장을 설치할 경우 개정안처럼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실장·국장의 명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 내에 1급 본부장제의 신설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이며, 재정경제부에 1급 기구인 국유재산

관리본부의 신설은 대통령령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그 설치근거를 두면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유정복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각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사항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 및 관련 법률로,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로 인사청문회의 실시 대상은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 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등 17인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그리고 대통령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한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및 경찰청장 등 총 27인이 되겠습니다.

인사청문에 관해서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가정보원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및 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제한하고 자칫 정치적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도덕성을 평가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임명절차에 있어 대통령이 국회와 책임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완해 주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각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및 정부조직법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며, 국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 특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조직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문화관광부를 문화예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부장관 소속하에 차관급인 관광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 중 관광에 관한 업무는 문화관광부 관광국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높은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로 인하여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문화관광부의 관광국을 관광청으로 격상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처 내에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기준은 부처 내에 1개 내지 2개 국으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곤란하거나, 업무의 성격상 정책적 기능보다 집행적 기능과 연구기능이 많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처 내에 독립적으로 관광청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 스페인 등이 있으나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관광공사를 두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위탁하고, 중앙정부는 관광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문화관광부 내에 관광국과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부처(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도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해서 관광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바람직한지, 아니면 종전처럼 한국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관광업무를 추진하되 중앙정부는 정책적 지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홍보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 소속하에 해외홍보원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해외홍보원은 대통령령인 국정홍보처와그 소속기관직제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외홍보원장은 1급이며 그 밑에 외신협력관과 4개 과를 두고 있고, 해외홍보 관련 주재관은 현재 16개국에 3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역사 왜곡 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해외홍보원이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정의 해외홍보기능을 더욱 부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으로 하고, 정부조직법 제4조에서 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해외홍보원이 중앙행정기관인 국정홍보처의 소속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웅래 의원안처럼 국정홍보처의 소속기관인 해외홍보원의 설치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둔다면 이는 정부조직법 제4조와 배치될 수 있으며, 앞으로 다른 부처의 소속기관까지 그 설치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둔다면 입법체계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문학진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차관급 기구의 교정청을 두는 것입니다.

현행 교도행정은 법무부 교정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정청,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정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은 2005년 5월 말 현재 총 1만 265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재사회화가 교정행정의 주요 시책으로 등장하고 있고, 최근 교정행정조직이 방대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처럼 법무부 소속 1개 국으로는 교정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차관급인 교정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처럼 교정청이 신설된다면 체계적인 관리·감독으로 교정행정의 서비스가 향상되고 전문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교정행정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추세도 있고, 교정청 신설에 따른 인원 증가 및 청사 신축 등에 상당한 정부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급 기구로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1년 1월 29일 교육부가 부총리급인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개편되면서 소관업무에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기능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법률의 제정 및 기구의 설치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였으며,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평가 기능도 미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산업계 및 노동계 등 인적자원 수요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상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교육부장관)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로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정부조직법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최근 인적자원 및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용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님!

○**강창일 위원** 우선 행자부장관님, 문학진 의원님이 이것을 냈는데…… 본래 정부 입법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전혀 국무회의에서는 논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전혀 안 됐습니다.

○**강창일 위원** 문학진 의원님은……

○**문학진 의원** 제가 알기에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안도 마련되고 적극 추진되다가 장관이 바뀌면서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 인적자원혁신본부에서 ‘혁신’이라는 용어는 양념으로 들어간 용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뭐,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인적자원본부 이런 뜻, 내용 아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런 뜻인데 인적자원 업무를 좀 발전적으로 가자 하는 취지에서 ‘혁신’이 들어간 겁니다.

○**강창일 위원** 지금까지의 업무를 좀 제대로 체계를 잡고 하자 이 얘기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혁신’이라는 용어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괜히…… 그 ‘혁신’이라는 용어 빼면 안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의미가 어떤 건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창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또 다른 위원님……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 위원** 제 생각은 지금 여기 의원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안에 따라서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는 것보다 일단은 저희 국회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얘기를 하되 여기에서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같이 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듣고 그것을 통해서 안을 낼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일단은 계류를 해 놓고 그게 나온 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희** 어떻습니까? 일단 소위원회에 회부해 놓고 거기에서 그냥 유보상태로……

○**이재창 위원** 그게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하고 다른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사실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소위원회에 넘기는 게 소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좋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렇게 하면 좋지요.

○**이재창 위원** 사실 저희가 이 안을 다루는 데 하나하나 보면 나름대로 전부 이유도 있는데, 전체 정부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총괄적인 의미의 검토가 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희** 예, 일단 상정은 해 놓은 상태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재창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예, 좋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위원장님, 다만 정부 제출안은……

○위원장 이용희 아니, 그것은 따로……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지금은 교정청 신설하는 문제지요.

○강창일 위원 지금 교정청 문제만이지요?

○위원장 이용희 그렇지요.

○강창일 위원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교정청 문제만이지요?

○이재창 위원 지금 나온 게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보면 다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문제점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룰 사안이 아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러니까 교정청 문제만 오늘 나온 거니까 그것을 유보해 놓고…… 다른 것은 지금 소위에 가 있잖아요.

○유정복 위원 가 있지요.

○위원장 이용희 소위에 가 있지 않습니까?

○유정복 위원 아니, 교육부 그것도 오늘 나왔고……

○위원장 이용희 오늘 나온 이것은 그냥 여기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나머지 법안은 지금 전부가 있잖아요. 지금 소위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창일 위원 정부 제출안은 소위원회……

○위원장 이용희 물론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미영 위원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정확히……

○위원장 이용희 됐어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괜히 더 복잡하게 할 것 없어요.
또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이재창 위원 그러니까 논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안을 제출하면 그때 병합해서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가지고 소위원회에 넘기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용희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의원입법으로 내놓은 문학진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교정청 신설 문제는 전체회의에 유보시켜 놓고, 장관이 제안설명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는 소위원회부하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서병수 위원 아니,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 변재일 의원, 김양수 의원, 유정복 의원, 이재오 의원, 노웅래 의원, 문학진 의원, 이것

다를 정부에서 새로이……

○이재창 위원 일단 한번 검토를 해서……

○서병수 위원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정부에서 새로이 하나 만들어 내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재창 위원 예, 그런 뜻입니다.

○노현승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정부 제출안만 토론을 해서 소위에 넘기자 이거지요.

○이재창 위원 예, 그렇지요.

○유정복 위원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홍미영 위원 그런데 장관님의 입장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지금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안에 대해서 정부 입법으로 대체입법을 내는 것은 확답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로서 가능하나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서……

○이재창 위원 아니, 정부 법안을 내라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자, 그러면 이제 정리된 겁니다.

장관이 제안설명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위로 넘어가고, 지금 이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학진 의원 제안설명한 것하고 나머지 여러 의원들이 하신 것은 전부 다 본회의에 유보하는 것으로……

○유정복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고요, 지금 정부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교정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좀더 정부 입장 차원에서 정리해서 위원회에 다시 정부 입장을 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인사청문회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이미 여야 간에 6월 국회에서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계류시킬 이유가 없지요.

○위원장 이용희 그거야 넘어가야지요.

○유정복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분명히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희 그렇게 하시자고요.

○노현승 위원 지금 제가 국회개혁특위 위원인데, 유정복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문제는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돼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회개혁특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행자위 것도 통과되는 것으로 보이면 되는 거니까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정복 위원** 그러니까 법안소위로 넘겨야 된다 이거지요.

○**강창일 위원** 예, 법안소위에 넘겨도 돼요.

○**위원장 이용희** 일단 법안소위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현승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넘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수 위원**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의원께서 제출한 국회법,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인사청문회법 개정하는 문제가 여야 원내대표단 간에도 이미 합의를 했고, 또 여야 정책협의회에서도 며칠 전에 이미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공정거래위원장이라든가 금감위원장이라든가 저희 한나라당에서 또 추가로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렇지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서병수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학진 의원이 제안설명한 교정청 신설 문제는 일단 전체 회의에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 소위에 회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재창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닌데…… 누가 정리 좀 해 드리세요.

○**위원장 이용희** 그러니까 유정복 위원 대표발의한 것하고 정부가 제출한 것은 소위로 가고 나머지는 전체회의에 회부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일단 법안심의는……

○**문학진 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용희** 말씀하세요

○**문학진 의원** 지금 제가 제출한 교정청을 외청으로 독립하자는 이 법안에 대해서 행자부나 예산

처의 입장은 다소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구가 늘어나고 또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소극적입니다.

제가 지난 5월 23일 이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행자부 관계자도 왔었고 예산처 관계자도 와서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하고 예산처의 입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입장은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법무부의 1개 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외청으로 독립으로 시키면 따로 떨어져 나간다는…… 법무부 전체 예산의 반을 이 교정국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무슨 밥그릇을 놓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법무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행자부, 예산처 등 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이 교정청 외청 독립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들어서 어떻게 하자 이러면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 3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내놓은 이 법안이 되기에는 쉽지 않은 난관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원입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여기서 우리가 따로 얘기했던 말을 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문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 상정하는 것으로 만족해 주셔야지, 오늘 내놓고 당장 하라던 안 되지요, 그렇지요?

○**유인태 위원** 이재창 위원님 말씀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너무 단시간에 하기에는 뭐하니 정부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다시 대체토론을 하자 그래서 소위로 넘기자는 것인데, 혹여나 그것이 이번 6월 국회에서 안 하면 정기국회로 넘어가는데 이미 법안이 제출된 것을 알고 여기에 장관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사실 정부도 여기에 대한 입장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정기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 법안들을 표류시킬 우려도 있으니 이를테면 시간만 있으면—여유 있으면—정부 입장을 지금 듣고 대체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6월 20일·21일·22일 3일간 상임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중의 어느 날 이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는 시간을 오늘 지정을 하시고 가야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 해당 상임위에서 막연하게 정부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하여 정기국회로 몇 달씩이나 표류시키는 것은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어떻습니까?

○**이재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부조직법을 의원입법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평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것에 대한 아무 제한 없이 의원입법으로 내다 보니까…… 정부조직이라는 것이 이것을 건드리면 저쪽에 영향이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잘못 다루기가 무척 쉬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입법으로 낸 것을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교정청만 하더라도 당장 행정자치부장관은 ‘전혀 정부에서 검토한 적 없다’ 하는 게 답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원입법으로 지금 상정은 했지만 그것을 여기서 심의하기 전에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좀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정부조직법이 많이 상정이 됐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혁신본부장 그것은 정부에서 분명히 의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일단 소위에 넘기되, 나머지 의원입법으로 낸 많은 분야에 대한 정부조직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계류를 시켜 놓고 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다루고, 그것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것은 별도로 논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되었습니다.

○**유인태 위원** 여야가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문학진 의원님, 그렇게 하시자고요.

○**문학진 의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행자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는 20일·21일·22일 이때 날을 지정해서 존경하는 행자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너무 그렇게 첫술에 배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것으로 만족하시라고요.

○**문학진 의원**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제 오늘 이틀 간에 33건의 법안을 심사한 셈이 됐는데 늘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다가 일을 너무 많이 맡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천생 내일·모래이틀 간 열심히 심도 있게 심사하셔 가지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은 반드시 다음주 월요일 6월 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재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제안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혁신본부 그것은 제안설명이 됐고 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으니까 일단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자는 게……

○**위원장 이용희** 여기서 토론하자는 얘기에요?

○**이재창 위원** 예, 그래서 소위에 넘기……

○**강창일 위원** 토론이 끝났는데 지금……

○**이재창 위원** 아니, 이것은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이기 때문에……

○**강창일 위원** 법안심사소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재창 위원** 아니지요. 오늘 처음……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토론해 봐요.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창 위원** 그래야 소위……

○**위원장 이용희** 그러니까 발언하시라고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이재창 위원** 제가 발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절차가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낸 겁니다.

○**위원장 이용희** 절차를 밟을 만큼 밟았으면 됐지요. 당장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본회의장도 아닌데 뭐 자꾸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강창일 위원**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테니 넘겨주십시오.

○**이재창 위원** 그렇게라도 의견을 내서 결정하면 좋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재창 위원님, 서병수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은 법안소위원이고,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심사하도록……

○**서병수 위원** 저는 법안심사소위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러니까 여기 소위원이 세 분이나 있으니까 특별히 두 분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 가지고 심의해라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병수 위원** 그런데 이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어느 정도 대체토론하고 소위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용희** 토론하시자고요.

○**서병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몇 달 사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게 세 번째로 제출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복수차관제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방위사업청 신설조항이라든지 또 오늘 정부가 제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개발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신설한다는 조항입니다.

2001년도에 교육부를 부총리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시킨 이유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적자원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못 한 이유 때문에 이런 부서를 만들겠다 이런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인적자원 관련 기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동부에도 있고 과학기술부에도 있고 산업자원부에도 있고 각 부처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인적자원 기능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기능이 현재와 같이 부에서 해 오던 기능 속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준독립적 기능인 인적자원혁신본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아시는 대로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는데 그 기능과 똑같은 형태의 틀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서병수 위원** 저희들이 사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과시켜 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복수차관제라든지 또는 방위사업청 문제라든지 교육부의 인적자원혁신본부 문제 등 줄줄이 지금 정부에서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구가 제대로 정비되지 아니해 가지고 인적자원개발 업무가 수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도 보면 인적자원개발을 포함한 교육분야의 정부정책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자면 참여정부 들어와서 2년 4개월 만에 교육부총리가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윤덕홍 부총리가 9개월, 안병영 부총리가 1년, 그리고 이기준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퇴임하고 이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수장이 어떤 일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없도록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적자원혁신본부장이라는 차관급 직제 신설은 현재 교육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신설할 인적자원혁신본부장으로 하여금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서병수 위원** 그런데 대통령 소속으로 교육혁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혁신위원회는 20인의 위원과 4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또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자문을 위해서 무려 42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인적자원개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차관급의 이런 본부를 만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현재 인적자원개발회의는 의장으로 있는 부총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의 정책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기능이 약하고, 또 그것에 대한 사무국 기능을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총리가 전담해야 될 정책 조정에 대한 사무국 기능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하고 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단독 업무는 부총리이지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차관의 라인에서 하고, 부총리인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은 각 부처의 정책 조정 기능을 전담하는 것인데 그 기능은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전담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국가 전체의 틀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서 사실상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무국 기능은 인

적자원혁신본부로 해서 부총리의 조정 기능에 대한 인적자원 라인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존에 하던 집행적 기능 이 두 라인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서병수 위원**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금 2년 반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정부조직기구가 굉장히 방만하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위원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자문위원회가 한 358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무려 129개 이상이 개점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3개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니다. 또 86개 위원회는 2년간에 걸쳐서 겨우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방만한 정부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간섭하고 견제하고, 또 각자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남발하다 보니까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혼선에 빠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어떤 일만 생기면, 조금만 일이 안 되면 계속해서 기구를 확대하고 차관제를 신설하는 이런 것은 삼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있어서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얼마나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 피해가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위원회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모였다 하더라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은 그것이 집행적 기능이 아닌 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장 또는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지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횡수가 얼마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한 이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해 보려고 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운영하던 틀처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모델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병수 위원** 어쨌든 인적자원혁신본부를 두겠

다라는 이런 발상은 복수차관제라든지 방위사업청 신설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창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께서 주재하시고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위 교육이라는 고유업무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별개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각 기능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독립되어 가지고 사실상 그 업무하고 별개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려면 또 그 나름대로의 스태프가 갖춰져야 된단 말이지요. NSC가 사실상 자문위원회인데도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니깐 그 밑에 다시 또 스태프를 형성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외교통상부나 국방부의 이런 업무하고 중복성이라고 그럴까, 장관의 역할에 오히려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국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관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본부를 둘 때 차관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부조직의 1급 이하는 부처 자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우선 1급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차관급으로 좀더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차관급은 차관급 나름대로의 격을 또 따져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하는 데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일단 소위원회에서 다룰 때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일 위원** 잠깐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회 기능이 아니고 기획도 하고, 정책 수립도 하고, 집행도 하는 사무업무를 보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위원회 기

능이 아닙니다.

○**강창일 위원** 교육혁신위원회라는 것은 자문기구이고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집행기구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잘못된 법이나 제도를 고쳐 나가고 자꾸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발전 아니겠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어 버리니까 자꾸 흘러가야지요. 그래서 그대로 고스란히 놔두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자꾸 제도를 만드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위로 넘기기로 하고……

지금 소위원 몇 분만 계신데 회의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거리를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하지만 내일모레 이틀 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병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는데 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6월 24일까지 위원장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법안심의 절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3. 주요현안보고

가. 행정자치부 소관

(19시07분)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행정자치부 소관 주요현안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일 때문에 많이 가셨고 또 시간도 많이 늦었고 하니까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병수 위원** 작년 예결특위 결산심사라든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책임운영기관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책임운영기관 제도 전반과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였고, 5월 9일에 감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두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9일까지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감사원에 통

보해야 될 것입니다. 맞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서병수 위원** 그 답변서를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줄 수 있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 그다음에 8개 부적합 기관에 대한 의견서를 6월 10일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8개 부적합 기관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의견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서병수 위원** 또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의 심의가 7월 중에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자료와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하여튼 결과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음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 위원**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공무원 전체 정원하고 묶여 가지고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빨리 확충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전체 공무원 정원의 절대다수가 교원이고 다만 지역 간의—시골과 도시 간의—불균형 때문에 나오는 현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 공무원 정원의 거의 75%가 교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로 증원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창 위원** 정부에서 조정할 문제이지는 하지만 정원에 묶여 가지고 교사가 충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니까 행자부 입장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매년 거의 5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재창 위원** 특히 수도권에서 문제가 심각한데, 어쨌든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과 문제인데, 9월부터 납기가 되는데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장관께서 실태를 잘 조사해서 국민에게 자치단체와 행자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일 것이 아니라 같이 해결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대립각은 아니고,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하는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생의 길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인데……

○이재창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이해시키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이해를 시켜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재창 위원 요즈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행정자치부와 시·군·구가 각각 가는 것 같은 면을 볼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지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취지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장관께서 발 벗고 나서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알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추가로 들어온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유정복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최규식 위원님, 이재창 위원님, 조성래 위원님, 홍미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6월 24일까지 위원장에게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자치부 주요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많은 법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영교 장관님과 권오룡 차관님을 비롯한 행자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위원 보좌진 여러분들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
【제안설명서】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제안연월일 : 2004. 11. 18.

제안자 : 이규택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말과 글은 민족문화의 요체로서 ‘한글’은 우리 문화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켜 민족문화를 개화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의 질과 양 그리고 속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정보화에 가장 편리한 한글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글은 현존하는 수많은 문자 가운데 창제 연월일과 창제자를 알고 있는 유일한 문자로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민족의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기에 한글날을 추가하여 5개 국경일로 법제화해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경축하는 문화의 축제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 기념행사를 한글의 창제자인 세종대왕릉(영릉)에서 거행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0월 9일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

둘째, 한글날 기념행사를 세종대왕릉(영릉)에서 거행한다.

이상으로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제안연월일 : 2004. 7. 23.

제안자 : 지병문 의원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입니다.

지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주민들이 이들을 해임하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체가 확대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계속 이양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과 자율성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견제장치는 미약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무능한 대표자를 선출했다라도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표자를 뽑은 이후에는 다음 선거까지 주민들이 공직자를 통제할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비리가 드러나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 행정공백으로 이어져 지방행정이 파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주민소환제입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개정해 구체적인 소환요건·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소환제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부분의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서명하고,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습시다.(’04. 10. 28)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한 이유는, 주민소환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주민소환제도를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소환 조례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회가 주민소환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두 법률안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地方自治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5. 4. 19.

제안자 : 백원우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구조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도 의회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교원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의결이 지방의회에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의결기관 간의 소모적인 대립·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 의회 내에 특별한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둬으로써 의결의 번복 및 이중 심의·의결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민의 교육적 요구와 교육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도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보장을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비교하여 구성·운영 및 권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권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 법안과 동시에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정하였는 바, 주요 골자는 교육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교육전문가(시·도 의원과 별도 선출된 교육의원)로 구성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 의회의 의결로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法中改正法律案

제안연월일 : 2004. 10. 22.

제안자 : 채수찬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과 행자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동료 의원 27인이 공동발의한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새마을금고법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경위에 제출된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이 일반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농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공제에 대하여 모집관련 규정 및 재무건전성 기준,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등 보험업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법률인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제는 본래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인데, 농협과 수협 신협 및 우체국보험은 다른 공제와 달리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민영보험에 비해 제대로 된 감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사보험은 준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경영이 어려워져 손실을 보게 되면 회원 또는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보전을 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적자금 투여 등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실화의 위험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또한 민영보험과 동일한 상품을, 같은 시장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므로, 전체 금융시스템의 효율을 저해하고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의 취지와 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제안연월일 : 2004. 11. 17.

제안자 : 변재일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

년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분리실험 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지사찰단 파견 등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을 위한 노력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관리체제가 허술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평화적 핵 이용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자력 이용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문제된 것은 실험규모나 추출량이 아니라 투명성과 허술한 관리체제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87년 원자력연구소와 같은 레이저분리법으로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랐던 점은 사전신고를 했고 실험장치 폐기도 IAEA 사찰 아래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착실하게 신뢰를 쌓은 일본은 비핵국가로는 유일하게 국제적 공인하에 폴루토늄재처리시설 가동을 통해 막대한 양의 핵연료를 자체 조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원전에 소요되는 농축우라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으로부터 지난 한 해에만 원자력연료 수입액이 2억 35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와 핵물질에 대한 기록과 보고기능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를 독립기관으로 발족하는 등 우리나라의 핵 비확산 투명성 증진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8월에는 국가 원자력 계량관리체제의 법, 규제, 행정, 기술적 체제를 평가하고 이 체제의 수행력을 평가한 후 안전조치의 효율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국가핵물질계량관리자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의 발족과 맞추어 국가원자력통제체제를 효과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원자력통제시스템을 갖춰 국제사회로부터 신뢰회복을 통한 자유로운 핵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법적 토대를 형성하고자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부의 임무에 원자력 규제를

규정하는 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2005. 1. 18.

제안자: 김양수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양산 출신 김양수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유지의 총 면적은 전 국토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및 관리체계의 부실로 인해 국유재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따라 경제적 활용을 통해 관리해야 할 국유재산이 202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조선총독부 등 이미 소멸한 일본인 법인명으로 관리되고 있거나, 정부 각 부처가 용도 폐지한 후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에 인계하지 않고 행정목적에 따라 경제적 활용을 하지 않는 유휴국유재산이 전체의 약 5%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리 허술로 인해 방치된 국유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어, 결과적으로 매년 1조 원 가까이 되는 국유재산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현재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과 단위 조직으로는 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우 미흡하여, 현재 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업무 부실, 시·도별 국유재산 내역 산출 불능 등 국유재산을 사회간접자본, 생활환경시설로서의 전환은 물론, 경제적 활용을 통한 국가재정에 기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총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내 국유재산관리본부를 신설하는 최소한의 행정조직개편으로 202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최대한의 관리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국유재산의 체계적·집중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가재정의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허술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

제안연월일: 2005. 4. 8.

제안자: 이재오 의원

서울 은평구 출신 이재오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의 업무영역은 과거 반복적인 정부조직의 통폐합으로 종교 문화예술 문화산업 방송언론 관광 해외문화홍보 체육업무 등 너무 광범위하고 서로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듯 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타 부처나 기관과의 업무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2월 국회에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업무가 청소년위원회로 통합 이전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지식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명칭부터 문화예술부로 변경하여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부문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 내에 관광국이 있고 산하단체로 한국관광공사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공사는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에서 매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방만한 운영으로 매년 수익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관광한국을 드높일 수도,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며 지속적인 관광수지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로 인하여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내 관광국을 관

광청으로 그 위상을 격상시켜 업무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직개편의 절실함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5. 4. 21.

제안자 : 노웅래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 등 16인이 지난 2005년 4월 21일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외국의 의도적 왜곡은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치밀한 왜곡과 일본 역사교과서 사건을 이어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도, 학문연구를 통해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울 독립된 상설 기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정홍보처 소속의 해외홍보원이 기존의 국정의 해외홍보 업무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제반 왜곡기술을 효과적으로 시정·대응하는 업무까지 맡도록 하여 교과서 왜곡·역사 왜곡·언론 왜곡 등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홍보처장 소속하에 해외홍보원 설치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통해 외국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영상물과 신문 방송·잡지 백과사전 지도 등을 분야별로 담당하는 전담 실무팀을 두어 정확한 실태파악과 해결책 마련을 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역사에 대한 외국의 의도적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국정홍보처장 소속하에 해외홍보원 설치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통해 외국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영상물과 신문·방송·잡지·백과사전·지도 등을 분야별로 담당하는 전담 실무팀을 두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해결책을 마련토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出席委員(23人)

강창일	고흥길	권오을	김기춘
김충환	노현송	서병수	서재관
심재덕	양형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인태	유정복	이명규
이용희	이인기	이재창	정진석
조성래	최규식	홍미영	

○請假委員(2人)

박기춘 이영순

○委員아닌出席議員(3人)

문학진 박찬숙 신기남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문위원	김종현

○政府側參席者

행정자치부

장관	관	오영교
차관	관	권오룡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정부혁신본부장		최양식
전자정부본부장		정국환
지방행정본부장		문원경
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其他參席者

새마을금고연합회
관리본부장

박동귀